



제2890호 2023. 3. 31.(금)

www.jeonbuk.go.kr

**조 례**

- 전라북도 조례 제5231호 전라북도 교육·학예의 시설 이용과 사용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1
- 전라북도 조례 제5232호 전라북도교육청 조직개편 등에 따른 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 10
- 전라북도 조례 제5233호 전라북도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 16
- 전라북도 조례 제5234호 전라북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 18
- 전라북도 조례 제5235호 전라북도 인재개발원 도민교육 조례 ..... 22
- 전라북도 조례 제5236호 전라북도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자 지원 조례 ..... 24
- 전라북도 조례 제5237호 전라북도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 26
- 전라북도 조례 제5238호 전라북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 28
- 전라북도 조례 제5239호 전라북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35
- 전라북도 조례 제5240호 전라북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 38
- 전라북도 조례 제5241호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 ..... 41
- 전라북도 조례 제5242호 전라북도 홀로 사는 노인 보호 및 지원 조례 ..... 44
- 전라북도 조례 제5243호 전라북도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 조례 ..... 46
- 전라북도 조례 제5244호 전라북도 해양쓰레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 49
- 전라북도 조례 제5245호 전라북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 52
- 전라북도 조례 제5246호 전라북도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56
- 전라북도 조례 제5247호 전라북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58
- 전라북도 조례 제5249호 전라북도 삼락농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 60
- 전라북도 조례 제5250호 전라북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 65
- 전라북도 조례 제5251호 전라북도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 69
- 전라북도 조례 제5252호 전라북도 특별교통수단 등의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71
- 전라북도 조례 제5253호 전라북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 72
- 전라북도 조례 제5254호 전라북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 76

**규 칙**

- 전라북도 규칙 제3210호 전라북도장학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79

**고 시**

- 전라북도 고시 제2023-88호 단평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 80
- 전라북도 고시 제2023-93호 자연휴양림 조성계획(변경) 고시 ..... 81

## 공 고

○ 전라북도 공고 제2023-630호 전라북도 한국전통 발효문화산업 투자선도지구 부분준공 공고	84
○ 전라북도 공고 제2023-640호 『전기사업법』 위반 사업자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87
○ 전라북도 공고 제2023-641호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공고	88
○ 전라북도 공고 제2023-645호 비영리민간단체 대표자 변경 등록공고	90
○ 전라북도 공고 제2023-654호 제51차 전라북도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고	91
○ 전라북도 공고 제2023-657호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 공고	92
○ 전라북도 공고 제2023-659호 2023~2024년 도시가스 공급시설 공사계획	93
○ 전라북도 공고 제2023-661호 기부금품 모집등록 공고	107
○ 전라북도 공고 제2023-662호 제399회 임시회에 제출할 조례안 공고	108

## 도지사 지시사항

○ 2023. 3. 24.(금) 간부회의 시 도지사 지시사항	114
-----------------------------------	-----

## 시 군

○ 군산시 고시 제2023-42호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3-468호선)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116
○ 군산시 고시 제2023-49호 도시계획시설(군산대학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17
○ 정읍시 공고 제2023-516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열람공고	120
○ 진안군 고시 제2023-41호 군계획시설(도로:소로3-12호 외 1개소)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124
○ 진안군 공고 제2023-383호 군계획시설(도로/소로3-2호)사업 실시계획 인가(변경) 열람공고	126

## 기 타

○ 익산소방서 공고 제2023-5호 자체점검 이행계획서 검토 결과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28
--	-----

**발행 전라북도 (편집 공보관실 ☎(063)280-2186)**

**(54968)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제39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2023. 3. 16.)에서 의결된 전라북도교육·학예의 시설 이용과 사용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전라북도교육감  
2023년 3월 31일

전라북도 조례 제5231호

### 전라북도 교육·학예의 시설 이용과 사용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북도 교육·학예의 시설 이용과 사용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그 밖의 수련시설”을 “그 밖의 교육지원시설 중 수련시설”로 한다.

제3조제1항제4호 “교육과 교육행사로써”를 “그 밖에”로 한다.

별표 2,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 제목 중 “그 밖의 수련시설”을 “그 밖의 교육지원시설 중 수련시설”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교육문화(학생복지)회관 시설사용료 한도액

1.기본시설사용료

(단위 : 원)

사 용 구 분	사 용 목 적	사 용 기 준	사 용 료 및 입 장 료	비 고												
공 연 장 (강 당)	공 연 및 행 사	오전 1회 (08:00~12:00)	120,000	1. <b>토요일이나</b> 공휴일 사용시 해당 사용료의 50% 가산 2. 공연연습 및 행사준비를 위한 시설 사용시(1회당) <b>사용료의 50%</b> 3. 초과사용료 1시간 미만 : 해당 사용료의 50% 1시간 이상 : 해당 사용료의 전액 <b>다만</b> , 초과사용은 다음 회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가능												
		오후 1회 (13:00~17:00)	160,000													
		야간 1회 (18:00~22:00)	210,000													
소 회의 실 (내 빈 실)	집 회 및 행 사	오전 1회 (08:00~12:00)	30,000													
		오후 1회 (13:00~17:00)	30,000													
		야간 1회 (18:00~22:00)	30,000													
전 시 실	전 시	주간 (09:00~18:00) 1평당	500	야간(18:00~22:00)은 사용료의 50% 가산												
실 내 수 영 장	수 영	1회(2시간 기준) 유 아 초 등 학 생 중 · 고 생 일 반	1,000( 700) 1,000( 700) 2,000(1,400) 3,000(2,100)	1. 단체는 30인 이상 [( )는 단체 입장료임] 2. 청소년 입장료는 중고생에 준함 3. 생리기간 중인 보건여성에게는 월 이용기간을 5일 연장 할 수 있음.												
	수 영	월 회 원(1일1회 기준) 유 아 초 등 학 생 중 · 고 생 일 반	20,000 20,000 40,000 60,000													
실 내 체육관	체육경기 기타행사	주간 1회 기준 (09:00~18:00)	50,000(4시간미만) 100,000(4시간이상)	1. 사용구분(1회)의 세부내용(1회는 조기, 주간, 야간으로 구분) <table border="1" data-bbox="901 1339 1359 1523"> <thead> <tr> <th>구분</th> <th>하절기 (4~9월)</th> <th>동절기 (10~3월)</th> </tr> </thead> <tbody> <tr> <td>조기</td> <td>05:00~08:00</td> <td>06:00~09:00</td> </tr> <tr> <td>주간</td> <td>08:00~19:00</td> <td>09:00~18:00</td> </tr> <tr> <td>야간</td> <td>19:00~23:00</td> <td>18:00~23:00</td> </tr> </tbody> </table> 2. 토·공휴일은 사용료의 50% 가산 3. 야간 사용시는 사용료의 50% 가산 4. 초과사용료는 시간당 해당 사용료의 20% 가산 (단,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5.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관람권 매표액의 20%(프로경기는 25%)를 사용료로 함. 다만, 전용사용료 미만인 때에는 전용사용료로 함. 6. 전라북도교육청 소속 각급학교 학생 및 전라북도교육감이 지정한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인 19세 이하 학생이 이용할 시 자체 기관실정에 맞게 감면 할 수 있음.	구분	하절기 (4~9월)	동절기 (10~3월)	조기	05:00~08:00	06:00~09:00	주간	08:00~19:00	09:00~18:00	야간	19:00~23:00	18:00~23:00
	구분	하절기 (4~9월)	동절기 (10~3월)													
조기	05:00~08:00	06:00~09:00														
주간	08:00~19:00	09:00~18:00														
야간	19:00~23:00	18:00~23:00														
체육시설 이용료	2시간 기준 (1일1회 기준)	1,000														

2.부속시설사용료

(단위 : 원)

부속시설명		기 준	사 용 료	비 고
앰 프	마이크	1 개	10,000	1. 토요일이나 공휴일 사용시 해당 사용료의 50% 가산 2. 공연연습 및 행사준비를 위한 시설사용시(1회당) 사용료의 50% ( <b>다만</b> , 냉·난방료는 해당 사용료의 전액으로 함) 3. <u>1회의 기준은 1.기본시설 사용료에서의 사용기준을 적용</u> 4. 초과사용료 1시간 미만 : 해당 사용료의 <b>50%</b> 1시간 이상 : 해당 사용료 전액. <b>(다만</b> , 초과 사용은 다음 회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가능) 5. 제3조에 해당할 때 사용료는 감면할 수 있음. <b>(다만</b> , 특수조명료 및 냉난방료는 50%로 감면) 6. 무선마이크에 사용되는 건전지 사용자 부담(연습용 포함) 7. 피아노 조율은 1급 자격 소지자로 한정 <b>(다만</b> , 조율비는 사용자 부담) 8. 영화촬영, 중계방송 일반 녹화시 기계장비는 사용자가 설치
	녹 음	카세트 테이프	1 회	
피아노	대형	1 회	40,000	
	중형		30,000	
	소형		20,000	
영 사 기		1 회	20,000×시간	
음향반사판		1 회	30,000	
냉 방		1 회	20,000원+{시간×전력량요금(원/kwh)×전력사용량(kwh)}	
난 방		1 회	20,000원+[{시간×전력량요금(원/kwh)×전력사용량(kwh)}+{시간×연료소모량(m <sup>3</sup> (ℓ)/h)×연료사용요금(원/m <sup>3</sup> (ℓ))}]	
조명료	특수조명	1 회	150,000	
	일반조명		70,000	
영 화 촬 영		1 회	30,000	
중계 방송	TV(비디오녹화) 중계	1 회	30,000	
	라디오방송		30,000	
일반녹화(VIDEO)촬영		1 회	20,000	
비디오프로젝트		1 회	40,000	
전 광 판		1 회	20,000원+{시간×전력량요금(원/kwh)×전력사용량(kwh)}	
수 도 요 금		1 회	20,000	
집 기 사 용	1회	탁자, 연 단	개당 1,000	
		침의자,기타	개당 500	

【별표 4】

전라북도교육청 학생해양수련원 시설사용료 한도액

1. 숙박비

(단위 : 원)

구분		대상	전라북도내 학생 (1인당)	교직원 및 교직원 가족 (1실당)	공공기관, 사회단체, 일반인 (1실당)	타시·도 학생 (1인당)	비고
숙박비	2인실	평시	3,000	25,000	40,000		
		여름철·겨울철	3,000	30,000	45,000		
	7인실	평시	800	35,000	50,000	3,000	1인추가시 4,000(학생 제외)
		여름철·겨울철	800	45,000	60,000	4,000	1인추가시 5,000(학생 제외)

- ※ 1. 여름철은 7월 10일부터 8월 20일까지 이고, 겨울철은 12월1일부터 2월 28일까지임
- 2. 타시도 학생은 단체(10명 이상)에 한함.
- 3. 식비는 자체 실정에 따라 원장이 별도로 정함.

2. 시설사용료

(단위 : 원)

사용구분	사용기준	사용료 및 입장료	비고
대강의실	1회(3시간 기준)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200,000	단, 3시간 초과시에는 1시간 마다 10,000원 추가하고, 냉방시설 사용료는 실소요액으로 산정.
소강의실	1회(3시간 기준)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70,000	
실내수영장	1회(2시간 기준) 유아 및 초등학생 중고생 일반	1,000(700) 2,000(1,400) 3,000(2,100)	1. 단체는 30인 이상[ ( )는 단체 입장료임] 2. 청소년 입장료는 중·고생에 준함. 3. 생리기간 중인 보건여성에게는 월 이용기간을 5일 연장 할 수 있음
	월회원(1일1회 기준) 유아 및 초등학생 중고생 일반	20,000 40,000 60,000	

## 【별표 6】

## 그 밖의 교육지원 시설 중 수련시설 시설사용료 한도액

## 1. 시설사용료

(단위 : 원)

구분 \ 대상	전라북도내 학생(1인당)	교직원 및 교직원가 족 (1실당)	공공기관, 사회단체, 일반인 (1실당)	타 시도 학생(1인당)	비고
숙박비	5명 이하	3,000	10,000	15,000	4,000
	5명 초과 ~8명 이하	3,000	15,000	25,000	4,000
	8명 초과 ~15명 이하	1,000	20,000	35,000	2,000
	15명 초과 ~20명 이하	1,000	25,000	40,000	2,000
	20명 초과 ~25명 이하	1,000	30,000	50,000	2,000
	25명 초과~	1,000	40,000	60,000	2,000
그 밖의 사항	1. 공동취사장, 화장실 등 부대시설 사용료 포함금액임. 2. 연료비(냉·난방비) 등, 그 밖의 실소요경비는 별도로 정할 수 있음. 3. 이 표에서 정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같은 조례의 유사 시설을 기준으로 정할 수 있음.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사용료 한도액) 시설사용료 한도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 가치세는 별도로 정한다.</p> <p>1. ~ 5. (생 략)</p> <p>6. 그 밖의 <u>수련시설</u>의 시설사용료 한도액은 별표 6 과 같다.</p> <p>제3조(사용료 감면) ① 제2조 각 호의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p> <p>1. ~ 3. (생 략)</p> <p>4. <u>교육과 교육행사로써</u> 제2조 각 호의 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p> <p>② (생 략)</p>	<p>제2조(사용료 한도액) ----- -----. -----.</p> <p>1. ~ 5. (현행과 같음)</p> <p>6. ----- <u>교육지원시설 중 수련시설</u> ----- -----.</p> <p>제3조(사용료 감면) ①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그 밖에</u> ----- -----</p> <p>② (현행과 같음)</p>



## 【별표 2】

□ **현행**

## 교육문화(학생복지)회관 시설사용료 한도액

## 1.기본시설사용료

(단위 : 원)

사 용 구 분	사 용 목 적	사 용 기 준	사 용 료 및 입 장 료	비 고
실 내 수 영 장	수 영	1회(2시간 기준) 유 아 초등학생 중·고생 일 반	1,000( 700) 1,000( 700) 2,000(1,400) 3,000(2,100)	1. 단체는 30인 이상 [( )는 단체 입장료임] 2. 청소년 입장료는 중고생에 준함 3. <b>13세 이상 55세 이하</b> 생리기간 중인 보건여성에게는 월 이용기간을 5일 연장 할 수 있음.
	수 영	월 회 원(1일1회 기준) 유 아 초등학생 중·고생 일 반	20,000 20,000 40,000 60,000	

□ **개정안**

## 교육문화(학생복지)회관 시설사용료 한도액

## 1.기본시설사용료

(단위 : 원)

사 용 구 분	사 용 목 적	사 용 기 준	사 용 료 및 입 장 료	비 고
실 내 수 영 장	수 영	1회(2시간 기준) 유 아 초등학생 중·고생 일 반	1,000( 700) 1,000( 700) 2,000(1,400) 3,000(2,100)	1. 단체는 30인 이상 [( )는 단체 입장료임] 2. 청소년 입장료는 중고생에 준함 3. <b>생리기간 중인</b> 보건여성에게는 월 이용기간을 5일 연장 할 수 있음.
	수 영	월 회 원(1일1회 기준) 유 아 초등학생 중·고생 일 반	20,000 20,000 40,000 60,000	

【별표 4】

□ 현행

전라북도교육청학생해양수련원 시설사용료 한도액

2. 시설사용료

(단위 : 원)

사용구분	사용기준	사용료 및 입장료	비고
대강의실	1회(3시간 기준)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200,000	단, 3시간 초과시에는 1시간 마다 10,000원 추가하고, 냉방시설 사용료는 실소요액으로 산정.
소강의실	1회(3시간 기준)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70,000	
실내수영장	1회(2시간 기준) 유아 및 초등학생 중고생 일반	1,000(700) 2,000(1,400) 3,000(2,100)	1. 단체는 30인 이상( )는 단체 입장료임] 2. 청소년 입장료는 중·고생에 준함. 3. 13세 이상 55세 이하 생리기간 중인 보건여성에게는 월 이용기간을 5일 연장할 수 있음
	월회원(1일1회 기준) 유아 및 초등학생 중고생 일반	20,000 40,000 60,000	

□ 개정안

전라북도교육청학생해양수련원 시설사용료 한도액

2. 시설사용료

(단위 : 원)

사용구분	사용기준	사용료 및 입장료	비고
대강의실	1회(3시간 기준)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200,000	단, 3시간 초과시에는 1시간 마다 10,000원 추가하고, 냉방시설 사용료는 실소요액으로 산정.
소강의실	1회(3시간 기준)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70,000	
실내수영장	1회(2시간 기준) 유아 및 초등학생 중고생 일반	1,000(700) 2,000(1,400) 3,000(2,100)	1. 단체는 30인 이상( )는 단체 입장료임] 2. 청소년 입장료는 중·고생에 준함. 3. 생리기간 중인 보건여성에게는 월 이용기간을 5일 연장할 수 있음
	월회원(1일1회 기준) 유아 및 초등학생 중고생 일반	20,000 40,000 60,000	

**【별표 6】**

**현행**

**그 밖의 수련시설 시설사용료 한도액**

1. 시설사용료

(단위 : 원)

구분	대상	전라북도내 학생(1인당)	교직원 및 교직원가 족 (1실당)	공공기관, 사회단체, 일 반 인 (1실당)	타 시.도 학생(1인당)	비고
숙박비	5평 이하	3,000	10,000	15,000	4,000	
	5평 초과 ~ 8평 이하	3,000	15,000	25,000	4,000	
	8평 초과 ~ 15평 이하	1,000	20,000	35,000	2,000	
	15평 초과 ~ 20평 이하	1,000	25,000	40,000	2,000	
	20평 초과 ~ 25평 이하	1,000	30,000	50,000	2,000	
	25평 초과~	1,000	40,000	60,000	2,000	
그 밖의 사항		1. 공동취사장, 화장실 등 부대시설 사용료 포함금액임. 2. 연료비(냉·난방비) 등, 그 밖의 실소요경비는 별도로 정할 수 있음. 3. 이 표에서 정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같은 조례의 유사 시설을 기준으로 정할 수 있음.				

**개정안**

**그 밖의 교육지원시설 중 수련시설 시설사용료 한도액**

1. 시설사용료

(단위 : 원)

구분	대상	전라북도내 학생(1인당)	교직원 및 교직원가 족 (1실당)	공공기관, 사회단체, 일 반 인 (1실당)	타 시.도 학생(1인당)	비고
숙박비	5평 이하	3,000	10,000	15,000	4,000	
	5평 초과 ~ 8평 이하	3,000	15,000	25,000	4,000	
	8평 초과 ~ 15평 이하	1,000	20,000	35,000	2,000	
	15평 초과 ~ 20평 이하	1,000	25,000	40,000	2,000	
	20평 초과 ~ 25평 이하	1,000	30,000	50,000	2,000	
	25평 초과~	1,000	40,000	60,000	2,000	
그 밖의 사항		1. 공동취사장, 화장실 등 부대시설 사용료 포함금액임. 2. 연료비(냉·난방비) 등, 그 밖의 실소요경비는 별도로 정할 수 있음. 3. 이 표에서 정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같은 조례의 유사 시설을 기준으로 정할 수 있음.				

제39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2023. 3. 16.)에서 의결된 전라북도교육청 조직개편 등에 따른 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를 공포한다.

전라북도교육감  
2023년 3월 31일

전라북도 조례 제5232호

## 전라북도교육청 조직개편 등에 따른 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전라북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개정)** 전라북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정책공보관, 교육국장, 행정국장, 예산과장”을 “교육국장, 행정국장, 정책기획과장”으로 한다.

**제2조(「전라북도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전라북도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교육국장”을 “정책국장”으로 한다.

**제3조(「전라북도 혁신학교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전라북도 혁신학교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교육국장, 정책공보관, 교육혁신과장, 학교교육과장”을 “정책국장, 교육국장, 미래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으로 한다.

**제4조(「전라북도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 개정)** 전라북도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미래인재과장, 학교교육과장”을 “창의인재교육과장, 유치동특수교육과장”으로 한다.

**제5조(「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기관 공인 조례」 개정)**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기관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와 제7조의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하고, 제9조제3호 중 “민원기록담당 사무관”을 “민원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6조(「전라북도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전라북도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총무과”를 “행정과”로, “총무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하며, 제8조제4항 중 “총무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

**제7조(「전라북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개정)** 전라북도교육청 성별영향평

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정책공보관, 교육혁신과장”을 “정책기획과장, 미래교육과장”으로 한다.

**제8조(「전라북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개정)** 전라북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제39조”를 “제47조”로 한다.

**제9조(「전라북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 전라북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행정국장”을 “정책국장”으로, 제7조제1항제3호 중 “예산담당사무관”을 “소관 예산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10조(「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행정국장, 총무과장, 행정과장”을 “정책기획과장, 문예체육강과장, 총무과장”으로 한다.

**제11조(「전라북도 지방교육재정계획·투자 및 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개정)** 전라북도 지방교육재정계획·투자 및 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예산담당사무관”을 “소관 예산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12조(「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7항 중 “재산·학부모지원담당”을 “재산·교육협력담당”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 전라북도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5조(메이커교육위원회의 설치) ① ~ ② (생략) ③ 당연직 위원은 <b>미래인재과장, 학교교육과장</b> 이 되고, 위촉위원은 메이커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④ ~ ⑧ (생략)	제5조(메이커교육위원회의 설치)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b>창의인재교육과장, 유초등특수교육과장</b> ----- ----- ----- ④ ~ ⑧ (현행과 같음)

5.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기관 공인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 <b>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b> 」 제40조에 따라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기관(보조기관,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각급학교, 회계관계공무원, 각종위원회를 포함한다)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및 등록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b>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b> 」----- ----- ----- ----- ----- -----
제7조(공고) 소속 기관은 「 <b>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b> 」(이하“영”이라 한다)제39조에 따라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도보에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 4. (생략)	제7조(공고) ----- 「 <b>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b> 」----- ----- ----- ----- ----- ----- 1. ~ 4. (현행과 같음)
제9조(공인의 보관자) 공인 보관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 2. (생략) 3. 민원사무전용 교육감 직인 : <b>민원기록담당 사무관</b> 4. ~ 8. (생략)	제9조(공인의 보관자) ----- ----- 1. ~ 2. (현행과 같음) 3. ----- : <b>민원담당 사무관</b> 4. ~ 8. (현행과 같음)

6. 전라북도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4조(기록관의 설치 및 관할)</p> <p>① 도교육청 기록관은 도교육청 <b>총무과</b>에 설치하고 기록관의 장은 <b>총무과장</b>이 되며, 도교육청 및 직속 기관의 처리과와 그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p> <p>② ~ ④ (생략)</p> <p>제8조(심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생략)</p> <p>② ~ ③ (생략)</p> <p>④ 심의회 위원장은 도교육청 기록관의 경우 <b>총무과장</b>으로 하고, 교육지원청 기록관의 경우 행정지원 과장으로 한다.</p> <p>⑤ ~ ⑥ (생략)</p>	<p>제4조(기록관의 설치 및 관할)</p> <p>① ----- <b>행정과</b> ----- ----- <b>행정과장</b> ----- -----</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8조(심의회 구성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b>행정과</b> <b>장</b> ----- -----</p> <p>⑤ ~ ⑥ (현행과 같음)</p>

7. 전라북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② (생략)</p> <p>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p> <p>1. 당연직 위원: 부교육감, 행정국장, <b>정책공보관</b>, <b>교육혁신과장</b>, 예산과장</p> <p>2. (생략)</p> <p>④ (생략)</p>	<p>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p> <p>1. -----: -----, <b>정책기획과장</b>, <b>미래교육과장</b>, 예산과장</p> <p>2. (현행과 같음)</p> <p>④ (현행과 같음)</p>

8. 전라북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의회의 의결)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b>제39조</b>에 따라 전라북도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p>	<p>제7조(의회의 의결) ----- ----- <b>제47조</b> ----- -----</p>





전라북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북도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라북도지사 김 관 영 원

2023년 3월 31일

전라북도 조례 제5233호

### 전라북도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북도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국내 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별표 1]

## 국내여비 지급표 (제4조 관련)

(단위: 원)

구 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	일 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 비 (1일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5,000	실비	25,000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5,000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100,000, 광역시 80,000, 그 밖의 지역은 70,000)	25,000

- 비고: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2.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4.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따른다.
5.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전라북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북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라북도지사 김 관 영 원

2023년 3월 31일

전라북도 조례 제5234호

## 전라북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 편의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주민”이란 전라북도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는 외국인 및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를 말한다.
2. “외국인가정”이란 도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주민과 혼인, 입양, 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나 주소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3. “외국인주민 지원단체”란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외국인주민의 지위) 전라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 외국인주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은 한 전라북도민과 동일하게 도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도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매년 “외국인주민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주민 지원의 목표와 비전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주민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3. 외국인 집중거주지역 환경개선에 대한 사항
4. 외국인주민 지원 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5. 외국인주민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민간단체와의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 7. 외국인주민 통계, 실태조사 등 필요한 조사에 대한 사항
- 8. 그 밖에 외국인주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의 지원계획은 제8조에 따른 “전라북도 외국인주민 지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6조(지원의 대상) ① 지원대상은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않은 사람은 제외한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이나 지침에 따라 대상을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의 범위)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외국인주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한국어 및 기초 생활 적응 교육
- 2. 외국인주민의 고충·생활·법률 및 취업 등의 상담
- 3. 외국인주민 생활 편의 및 응급 구호
- 4. 외국인주민을 위한 각종 문화·체육행사의 개최
- 5.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가정의 보육·교육 등
- 6. 외국인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를 위한 교육·홍보
- 7. 외국인주민의 권익·인권 보호 및 고충 해결을 위한 쉼터 운영 지원
- 8. 그 밖에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북도 외국인주민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을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어느 특정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경제부지사, 외국인주민 업무 담당 국장,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전라북도교육청 외국인주민 담당 국장, 전라북도경찰청 외국인주민 관련 부서장, 전주 고용센터장, 전주 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산업인력공단전북지사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고, 나머지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 1. 전라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 2. 외국인주민 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지역사회에 적극 참여하거나 성공적인 정착을 한 외국인주민

④ 위원회는 경제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외국인주민 지원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외국인주민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외국인주민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가정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4. 외국인주민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한 경우
2. 사망, 국외이주,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5.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제14조(외국인주민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외국인주민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주민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

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소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업무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관계 공무원에게 위탁 및 운영비 지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포상) 도지사는 외국인주민 지원 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명예도민) ① 도지사는 도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주민에 대하여 명예도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

②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에 따른다.

제18조(세계인의 날) 도지사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세계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식 및 문화·예술·체육 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명예도민증 수여, 유공자·유공단체 격려
4. 그 밖에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전라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된 사업 등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전라북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북도 인재개발원 도민교육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라북도지사 김 관 영 원

2023년 3월 31일

전라북도 조례 제5235호

## 전라북도 인재개발원 도민교육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북도 인재개발원 도민교육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자기 계발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민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나. 전라북도 소재 국가·공공기관, 지방 공기업·출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의 종사자
2. “도민교육”이란 전라북도 인재개발원에서 도민 등에게 제공하는 교육훈련을 말한다.

제3조(운영계획 수립 등) ①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교육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교육훈련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민교육 기본목표
2. 도민교육 운영과정 및 대상
3. 도민교육 일정 및 기간
4. 그 밖에 도지사가 도민교육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도민교육 운영) 도지사는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공익상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민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국정·도정 과제와 시책 등의 공유를 위한 교육
2. 지방자치에 대한 의식 및 자율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3. 사회적 책무에 대한 인식제고 및 공익활동 확산 교육
4. 그 밖에 도지사가 도민 등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5조(지원) 도지사는 도민교육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에서 도민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교재비 및 실습 체험비
2. 현장 견학에 필요한 경비
3. 그 밖에 도지사가 도민교육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북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북도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자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라북도지사 김 관 영 인

2023년 3월 31일

전라북도 조례 제5236호

## 전라북도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자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2023년 새만금에서 개최되는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자들의 참여 여건을 조성하여 전라북도와 새만금을 세계에 홍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참가자”란 한국스카우트 지방·특수연맹에 가입하고,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 참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도자”: 한국스카우트 지방·특수연맹에 가입하고, 지도자 훈련 상급과정 이상 수료한 만 18세 이상의 대지도자

나. “운영요원”: 한국스카우트 지방·특수연맹에 가입하고, 지도자 훈련 중급과정 이상 수료한 만 18세 이상의 로버스카우트 및 성인 지도자

다. “기타 참가자”: 한국스카우트 지방·특수연맹에 가입하고, 2023년 기준 만 14세 이상에서 만 17세 이하의 청소년

2. “참가비 등”이란 다음 각 목의 비용을 말한다.

가. “공식참가비”: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설립된 조직위원회가 공지한 잼버리 참가비

나. “공동경비”: 한국스카우트연맹 및 지방연맹이 공지한 국제활동 대표단 파견 운영 등에 공동으로 소요되는 경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잼버리 참가비 등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잼버리 참가비 등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참가비 등의 지원) ① 도지사는 잼버리에 참가자들에게 참가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참가비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대상) 제5조에 따른 잼버리 참가비 등의 지원 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참가자
2. 전라북도 소재 한국스카우트 지방·특수연맹에 등록된 참가자
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 참가 예정이나 참가한 사실을 스카우트 연맹이 인정한 참가자
4. 잼버리 참가비 등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따라 참가비 등을 지원받지 않은 참가자

제7조(부당수령 방지) 도지사는 제6조의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부당하게 지원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지원금 부당수령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전라북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북도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라북도지사 김 관 영 원

2023년 3월 31일

전라북도 조례 제5237호

### 전라북도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북도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2배”를 “5배”로 한다.

별표 1은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국내 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별표 1]

## 국내 여비 지급표

(단위: 원)

구 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	일 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 비 (1일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5,000	실비	25,000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5,000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100,000, 광역시 80,000, 그 밖의 지역은 70,000)	25,000

비고: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 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1의2.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자동차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3.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기획재정 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따른다.
4.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전라북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북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라북도지사 김 관 영 원

2023년 3월 31일

전라북도 조례 제5238호

## 전라북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제·사회·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및 기후·환경 위기 극복을 추구함으로써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전라북도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3. “지속가능발전지표”란 경제, 사회, 환경 요소 가운데 지속가능한 발전 가능성을 대표하는 지표로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현재의 상황을 점검하는 수단을 말한다.
4. “지속가능발전목표”란 2015년 국제연합(UN:United Nations) 총회에서 채택한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17개 목표와 전라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5조에 따라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으로 수립하는 목표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지속가능발전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속가능발전이 도정 운영의 핵심 원칙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도의 주요 정책과 계획 등에 지속가능성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도지사는 전라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정책결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도민의 참여를 장려한다.
3. 도지사는 새로운 문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행정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혁신을 촉진한다.
4. 도민은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책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지속가능발전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②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제2장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 등

제5조(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① 도지사는 도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 현황 및 여건 변화와 전망에 관한 사항
2.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사회·환경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4.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구현, 생태·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 등 분야별 시책에 관한 사항
5. 지속가능발전지표에 관한 사항
6. 직전 기본전략에 대한 평가
7. 그 밖에 도지사가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도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1. 국가기본전략
2. 제7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3. 제10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④ 도지사는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11조에 따른 전라북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
2.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일부 변경
3. 착오, 오키,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의 수정

⑤ 도지사는 기본전략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전라북도의 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보고하고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추진계획의 수립·이행) ① 도지사는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1.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
- 2.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의 수정

③ 도지사는 추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도의회에 보고하고 국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추진상황의 점검) ① 위원회는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계획을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도지사에게 정책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받은 도지사는 그 의견을 존중하고 이를 조례의 제정·개정이나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송부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도의회에 보고하고 국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조례 제·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도지사는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개정하려는 때에는 「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자치법규 입법예고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때에는 행정계획 확정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통보받은 조례나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의 검토 결과를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회신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적절하게 반영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지속가능성 평가

제9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도지사는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



하여 도의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도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10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① 위원회는 2년마다 제7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와 제9조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도지사에게 제출한 후 공표하여야 한다.

②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7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제9조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지속가능발전 향후 과제 및 정책방향
4. 그 밖에 도의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를 지체 없이 도의회와 국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장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기본전략, 추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제7조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3. 제7조제3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관련 정책의견 제시 등에 관한 사항
4. 제7조제4항에 따른 조례 또는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및 검토 결과의 통보에 관한 사항
5. 제9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보급 및 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
6. 보고서 작성 및 공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된다.

1. 행정부지사
2. 위촉위원 중 위원회에서 선출하는 사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1. 위촉위원: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 2. 당연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 가. 기획조정실장
  - 나. 경제·사회·환경 분야를 담당하는 실·국장 중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촉위원 중 1명을 실행간사로 지명하여 특정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에 교체되는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전임자의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최근 3년간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배제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1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

최하며 필요에 따라 개최시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인,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제18조(운영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긴급한 사항을 처리하거나, 회의 안건 조정, 운영 및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운영위원장은 위원회의 공동위원장 중 위촉직 위원장이 되고,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운영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 ③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운영세칙)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전라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등) ① 도지사는 도의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수립·시행 과정에 도민이 참여하는 전라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도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 및 제시
  2. 도의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여론 수렴
  3. 지속가능발전 교육, 홍보, 도민 실천 및 교류·협력 활동
  4. 그 밖에 도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협력이 필요한 사업
- ③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협의회 사업수행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④ 제1항의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5장 보칙

제21조(지속가능발전 정보망 구축 등) ① 도지사는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정보의 원활한 생산·보급 등을 위하여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9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 2. 제10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 3. 그 밖의 유용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정보

제22조(조사·연구·교육 등) ① 도지사는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조사·연구·교육을 하고 홍보 등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속가능발전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사업자·민간단체 등을 인증하는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제23조(국내외 협력 등) ① 도지사는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시민사회, 산업계, 학계, 중앙행정기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협의회 등과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의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주민의견 수렴, 지표개발, 지속가능성 평가 및 모니터링,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작성, 시민실천사업, 교육 및 홍보 등을 추진함에 있어 협의회 등과 상호 협력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설치된 전라북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른 협의회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환경기본 조례」 제22조는 삭제한다.

전라북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북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라북도지사 김 관 영 원

2023년 3월 31일

전라북도 조례 제5239호

### 전라북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계선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경계선지능인”이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등의 부족으로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이에 대한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 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이란 경계선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써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의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계선지능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전라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한 경계선지능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계선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경계선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 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의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 3.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개발·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4.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도와 시·군,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 5.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도의 경계선지능인 생애주기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① 도지사는 경계선지능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대상자 선정,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
- 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지원
- 3. 경계선지능인의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상담지원
- 4.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지원
- 5.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도와 시·군, 관련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 6.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탁) 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운영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 도지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군, 유관기관, 관련 단체,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예산 등의 지원) ① 도지사는 경계선지능인의 안정적인 평생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시·군, 단체, 개인에 대하여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북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북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라북도지사 김 관 영 인

2023년 3월 31일

전라북도 조례 제5240호

### 전라북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보취약계층이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4조로 정하는 유·무선 정보통신에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정보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 또는 활용이 어려운 저소득자,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고령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으로서 전라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정보격차”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격차를 말한다.
3. “정보통신접근성”이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무선 정보통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4. “이동통신단말장치”란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5. “도 산하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도가 출자·출연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도가 설립한 지방공사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행계획의 목표와 추진 방향



2.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4.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 수립 시 「전라북도 정보화 조례」 제4조에 따른 전라북도 정보화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해마다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법 제46조제6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침 중 정보통신접근성 준수에 관련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고 그 결과를 제4조의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정보취약계층의 의견청취
2. 도 및 도 산하기관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및 이동통신단말장치 내 응용 소프트웨어의 정보통신접근성 실태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정보통신접근성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추진사업) 도지사는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 및 도 산하기관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모니터링 및 기술 상담
2.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원인력 양성
3.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홍보
4.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다음 각 목의 교육

가. 정보통신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육

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화 전문교육

다.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사이버교육

5. 그 밖에 도지사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정보격차 해소 지원) 도지사는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정보통신제품의 개발·생산 또는 관련 기술의 개발·보급 사업자에 대한 재정적·기술적 지원 사업
2.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통신제품(스마트기기 등)의 유·무상 지원 사업
3. 농어촌지역 정보인프라 구축과 정보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
4. 사회적 인식 개선 및 관련 정책사업에 대한 홍보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격차 해소 사업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시·군 및 정보통신접근성 관련 전문기관·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위탁) ① 도지사는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정보통신접근성과 관련된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도지사는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단체 등을 「전라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전라북도 장애인 웹 접근성 향상 조례」를 폐지한다.

전라북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라북도지사 김 관 영 원

2023년 3월 31일

전라북도 조례 제5241호

###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전북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고 여성의 경쟁력 향상과 사회참여 등 여성·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전북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① 전북여성가족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②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재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재단의 정관 및 규정에 따른다.

**제3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양성평등 및 여성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
2. 여성의 사회활동 네트워크의 거점 역할
3. 여성·가족·복지에 관한 정책개발·조사·연구
4. 성주류화 제도 연구 및 지원사업
5. 여성 인력개발 및 교육 사업
6.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
7.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고용유지 지원사업
8. 여성 문화활동 및 복지증진 사업
9. 여성단체 지원 및 강화
10. 전라북도내 시·군 등 외부기관, 단체 등에서 의뢰한 조사 또는 연구사업
11. 그 밖에 재단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제4조(정관)** 재단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관을 작성하여 미리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하

며,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임원 등)**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 및 원장을 비롯한 이사와 감사를 두며, 임원의 정수, 자격기준, 추천방법, 절차, 임기 및 임면에 관한 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재단의 운영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도지사는 재단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

**제7조(재산운영 및 관리)** ① 재단의 원장은 재단에서 관리 및 운영하고 있는 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경영 전반에 대해 책임을 진다.

② 재단의 재산은 설립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중요 재산의 취득 및 처분 등에 대하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재단의 예산 및 재무회계 등에 관한 사항은 재단의 정관으로 정하되, 전라북도 관련 규정을 준용해야 한다.

**제8조(사업의 위탁)** ① 도지사는 여성의 삶의 질 향상, 경쟁력 제고, 사회 참여 활동 촉진, 복지증진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 관련 시설 및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업무위탁에 관한 경비는 별도 협약에 의한다.

**제9조(사업계획 및 결산)**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변경할 때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서와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행정지원)** 도지사는 재단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무의 범위에서 이를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검사 및 감독)** ① 도지사는 검사 및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관련 서류 및 장부, 기타 참고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그 업무에 대해 보고를 하게 하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2조(운영 규정)** 재단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 조례와 정관이 정하

는 범위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북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북도 홀로 사는 노인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라북도지사 김 관 영 원

2023년 3월 31일

전라북도 조례 제5242호

### 전라북도 홀로 사는 노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을 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홀로 사는 노인”이란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을 한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생활하는 사람
  - 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 2. “부양의무자”란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배우자(사실혼 배우자를 포함한다)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혼 배우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홀로 사는 노인의 인간다운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보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홀로 사는 노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 2. 사업대상의 규모
- 3.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 4.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현황조사 및 관리
- 5. 홀로 사는 노인 돌봄사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 6. 민간부문의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방안
- 7. 예산 지원
-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 및 자문을 들을 수 있다.
- ④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⑤ 제1항의 지원계획 수립·시행 및 제4항의 연도별 시행계획은 「전라북도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 제8조의 기본계획과 같은 조례 제11조의 시행계획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홀로 사는 노인의 복지서비스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노인돌봄 관련사업 지원
  2.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돌봄사업 종사자 교육 및 파견
  3. 관련 기관 협력체계의 구축 및 교류
  4. 홀로 사는 노인 사회안전망 구축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홀로 사는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
-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른다.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홀로 사는 노인의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도내 홀로 사는 노인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는 보건복지부가 실시하는 독거노인 현황조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에 대한 방법과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재정지원) 도지사는 도내 홀로 사는 노인을 위한 민간자원의 활용과 공공·민간의 적절한 연계 등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시·군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 학생들이 홀로 사는 노인을 위한 자원봉사나 결연프로그램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교육청, 학교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북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북도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라북도지사 김 관 영 원

2023년 3월 31일

전라북도 조례 제5243호

## 전라북도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사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도민 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내급수관”이란 「수도법」 제3조제24호의 급수설비 중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의 대지경계선 안에 설치되어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 등이 관리하는 급수관을 말한다.
2.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 단독주택, 제2조제3호의 다가구주택, 제3조제1항의 아파트, 제3조제2항의 연립주택, 제3조제3항의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3. “노후관”이란 주택에 설치된 옥내급수관 중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재질의 관과 2000년 이전 준공된 주택에 설치된 관을 말한다.
4. “공용급수관”이란 주 수도계량기와 세대별 수도계량기 사이의 배관을 말한다.
5.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6. “개선”이란 관 내부의 녹 및 이물질을 제거한 후 코팅 등의 방법으로 통수 기능을 회복하는 갱생과 관 내부의 녹 및 이물질이 있는 노후화된 옥내급수관을 새로운 내식성 급수관 등으로 바꾸는 교체 또는 수도관 성능 향상 장치를 총칭한다.
7. “개선비용”이란 본 사업 추진을 위해 도비와 지방비로 편성되는 예산을 말한다.
8. “기초생활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를 말한다.
9.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라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후 옥내급수관 개



선사업(이하 “개선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전라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 개선사업 관련 도비 보조금을 신청하는 시·군에 적용한다.

제5조(개선사업 지원대상) ① 개선사업 대상은 도내 노후 옥내급수관을 사용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세대로서 그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
  2. 단독주택 : 다가구주택에 포함되지 않는 1가구 거주 주택
  3. 다가구주택 : 2가구 이상 거주 주택으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모두 적합해야 한다. 다만 지분 등기된 다가구주택의 경우 공동주택에 준하여 지원한다.
    - 가. 19가구 이하
    - 나. 3층 이하
    - 다. 1가구는 침실, 부엌, 출입문이 독립되어 있어야 한다.
  4. 근린생활시설 내 포함된 주택은 건축물대장상 주택 부분에 한하여 지원하며,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담당자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 중에서 적합한 기준을 따른다.
  5. 공용급수관 : 공동주택의 건물 내 공동으로 사용하는 급수관 개선에 대해 지원하며, 개선하려는 공용급수관을 사용하는 주민의 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5~100% 이내이어야 한다.
  6. 그 밖에 도지사가 옥내급수관 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1. 사업수행 직전 연도 말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지원을 받아 옥내급수관 개선을 시행한 주택
2.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 승인인가를 취득한 주택
3. 「주거급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 세대

제6조(지원대상 우선순위) ① 개선사업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주택
2. 2순위 : 옥내급수설비가 아연도강관으로 설치된 주택
3. 3순위 : 2000년 이전 준공 주택 거주세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옥내급수관의 노후관 문제로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보조금 지원) ① 도지사는 노후주택의 개선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개선사업 지원 총액 중 50%는 도가, 50%는 해당 시·군이 부담한다.

③ 세대 급수관 공사비 지원금은 세대당 최대 2백만원과 총 공사비의 95% 중 낮

은 금액으로 지원한다.

④ 공용급수관 공사비 지원금은 세대당 최대 1백만원과 총 공사비의 95% 중 낮은 금액으로 지원한다.

제8조(개선사업 수행기관) 개선사업은 시·군에서 개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청인에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수행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북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북도 해양쓰레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라북도지사 김 관 영 인

2023년 3월 31일

전라북도 조례 제5244호

## 전라북도 해양쓰레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전라북도 해양쓰레기 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전라북도 해양폐기물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전라북도 관할 해양 및 바닷가의 해양폐기물 발생을 예방하고 발생한 해양폐기물을 신속하게 수거·처리하는 등 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폐기물 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해역을 말한다.
2. “바닷가”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한다.
3. “해양폐기물”이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해양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 및 주민의 책무) ①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해양폐기물 발생을 예방하고 발생 시 신속하게 수거·처리하는 등 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민은 일상생활에서 해양환경 보호와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해양에서의 개발·이용행위 등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사업을 하는 자는 해양오염 및 해양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해양폐기물 없는 깨끗한 해양을 만드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도지사는 해양폐기물 발생 예방 및 수거·처리 등 깨끗한 해양 및 바닷가를 만들기 위하여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의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라북도 해양폐기물 관리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법 시행령 제3조제3항 각 호의 사항
2. 해양폐기물 관리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3. 해양폐기물의 발생 예방 및 수거·처리 방안
4. 해양폐기물 재활용 촉진 방안
5. 해양폐기물 발생원인, 발생량 등에 대한 조사·연구
6. 그 밖에 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해양폐기물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할 해역의 해양폐기물 발생원인, 유입 경로, 발생량, 발생 종류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해양폐기물 관리 사업 등) ① 도지사는 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양폐기물 발생 예방 및 유입 차단시설 설치·운영
2. 해양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3. 해양폐기물에 대한 조사·연구
4. 해양폐기물 발생 예방 및 유입 차단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해양폐기물과 바다환경 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양폐기물 관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도지사는 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한 제6조제1항 각 호의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도·감독)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지원·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해양폐기물관리 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수립·변경
2. 해양폐기물 유입·수거·정화 등과 관련된 갈등 해결 및 지원
3. 그 밖에 도지사가 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해양폐기물 관리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전라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폐기물 처리 및 해양 관련 대학교수
3. 하천 및 해양수산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력이 풍부한 사람
4. 해양 및 육상 폐기물 처리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그 밖에 도지사가 해양폐기물 방제 및 해안관리정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에 간사를 두고 간사는 해양폐기물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선정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2조(협력) 도지사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하여 어촌계, 민간단체, 행정기관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제13조(업무의 위탁)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위탁의 경우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북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북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라북도지사 김 관 영 원

2023년 3월 31일

전라북도 조례 제5245호

### 전라북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에 대한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사회적응 등 우리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제반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 2.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 허가를 받은 사람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라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 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사회적응, 복지증진 등에 필요한 제도 및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매년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방향
- 2. 다음 각 목의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 가. 결혼이민자 등의 안정적 정착 지원
  - 나. 결혼이민자 등의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

다. 결혼이민자 등의 인권보호

라. 다문화가족 내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

마. 다문화가족 자녀의 양육 및 교육 지원

바. 위기 다문화가족 지원

사.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

3.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4. 다문화가족 지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3년마다 도내 다문화가족 및 그 구성원의 생활실태를 파악하여 다문화가족의 정책 및 지원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출연기관 또는 외부 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6조(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전라북도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다문화가족 지원시책에 관한 사항

3.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전라북도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은 행정부지사와 복지여성보건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전라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2. 도내 교육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경찰청 등에서 추천한 사람

3.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사회활동 및 정책개발 관련 경력이 있는 다문화가족

5. 도내에 2년 이상 거주한 다문화가족 대표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

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④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 ⑤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협의회 회의 진행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 등)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다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사회적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 홍보, 문화·예술·체육행사
2. 결혼이민자 등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적응교육
3.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직업교육·훈련 및 일자리 연계
4.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지원
6.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자녀의 보육·교육 지원 및 한국어교육 등 언어능력 제고에 필요한 지원
7. 결혼이민자 등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

- 8.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번역 서비스의 제공
- 9. 결혼이민자 등의 사회경쟁력 제고를 위한 학비 지원 등 학력 증진 지원
- 10. 문화적 다양성 함양을 위한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및 문화체험 활동 지원
- 11. 결혼이민자 등의 국적취득 지원
- 1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의견수렴) 도지사는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고, 제안된 의견을 검토하여 도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도지사는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 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포상) ① 도지사는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한 사업에 공로가 인정되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구체적인 절차 등은 「전라북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전라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전라북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북도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라북도지사 김 관 영 인

2023년 3월 31일

전라북도 조례 제5246호

### 전라북도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북도 스마트수산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소득증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수산업”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 2. “수산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3. “스마트수산업”이란 수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수산업의 생산·유통·가공 등의 과정에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한 산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라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 스마트수산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② 도지사는 도내 시·군이 스마트수산업 육성시책을 수립·시행하고자 할 경우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도지사는 스마트수산업 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대학, 연구소,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4조(스마트수산업 육성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스마트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도 스마트수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스마트수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 2. 스마트수산업의 육성시책 및 분야별 추진전략
- 3. 스마트수산업 기술의 개발·보급·확산 및 활용 촉진
- 4. 스마트수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자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
- 5. 스마트수산업 전문인력 양성

6. 스마트수산업 육성을 위한 컨설팅·교육 지원

7. 그 밖에 도지사가 스마트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육성계획을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전라북도 수산업·어촌 발전계획으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전라북도 수산업·어촌 발전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④ 도지사는 육성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스마트수산업 육성사업 추진) ① 도지사는 스마트수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마트수산업 기반시설 조성·설치 및 정비

2. 스마트수산업 관련 장비 등의 설치 및 운영

3. 스마트수산업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4. 스마트수산업 관련 교육 및 컨설팅

5. 그 밖에 도지사가 스마트수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스마트수산업을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제1항의 사업을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재정 지원) ① 도지사는 스마트수산업 육성을 위해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법인·단체·수산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스마트수산업을 하려고 하는 청년창업수산인 및 후계어업인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스마트수산업 육성을 위해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수산인에게 전라북도 농림수산 발전기금을 통해 용자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라북도 농림수산 발전기금 운용 조례」 제9조제10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제7조(중복지원 제한) 도지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내용의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법인·단체·수산인에게는 그 범위에서 제6조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8조(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 심의)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육성계획에 포함된 사항이나 제5조에 따른 육성사업에 대한 중요한 정책 심의가 필요한 경우 법 제8조에 따른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제9조(홍보) 도지사는 스마트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우수 실천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북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북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라북도지사 김 관 영 인

2023년 3월 31일

전라북도 조례 제5247호

### 전라북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북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호선한다”를 “선출한다”로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용역·자문·연구”를 “용역, 자문, 연구”로 한다.  
제7장(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7장 기업애로해소자문단 구성·운영

제24조(설치·기능) ① 도지사는 기업의 애로사항 처리에 필요한 자문을 위해 전라북도 기업애로해소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자문단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기업현장의 경영 및 기술애로 등에 대한 자문
2. 기업애로해소와 관련한 처리방법, 처리절차, 주요 사례 등 자문
3. 기업애로에 대한 현장조사 및 처리방안 검토, 처리 등
4. 그 밖에 도지사가 기업애로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제25조(구성 및 임기) ① 자문단은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경제 관련 단체 및 기관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2. 기업·경제·규제 등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3. 그 밖에 도지사가 기업애로해소 자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6조(수당 등 지급) 자문단의 회의 또는 현장방문에 참석하여 기업애로해소 처리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

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를 제27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북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북도 삼락농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라북도지사 김 관 영 인

2023년 3월 31일

전라북도 조례 제5249호

### 전라북도 삼락농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전라북도 삼락농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전라북도 농어업·농어촌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북도 농어업인과 협치농정을 통해 현장 중심의 농정 혁신을 이루고 농어업·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농어업·농어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협의회”는 전라북도 농어업·농어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내에 위원회 운영 및 실무를 담당하기 위해 설치하는 기구를 말한다.
2.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분야별 효율적 대응을 위해 별도 설치하는 기구를 말한다.
3. “특별분과”는 위원회에서 시급하거나 중요한 현안 사항 대응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한시로 설치·운영하는 기구를 말한다.
4. “포럼”은 위원회에서 발굴한 정책, 사업, 제도 개선 사항 등을 대외에 알리고, 의견수렴 및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별도 운영하는 기구를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위원회를 두며, 위원회 내에 실무를 담당하는 운영협의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농어업·농어촌의 정책방향 및 신규사업 발굴에 관한 사항
2. 농어촌 지역발전 및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3.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의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위원회 전반, 특별분과 구성 운영 및 포럼 운영에 관한 사항
5.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한 사항 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운영협의회는 위원회 위원 중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성비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위원회는 민·관 공동위원장 체계로 운영하되, 행정은 경제부지사를 당연직으로 하고, 민간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 및 운영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회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 당연직 위원은 경제부지사, 농생명축산식품국장, 새만금해양수산국장, 농업기술원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전라북도의회가 추천한 도의원
2. 농어업인단체 관계자 및 농축수산식품분야 생산·가공·유통·관광 관련 농어업인
3.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축산·관광 관련 대학교수 등 학계 전문가
4.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축산·관광 관련 정부·공공기관 및 도 출연기관 관계자
5. 그 밖에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축산·관광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제5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를 효율적 운영하기 위해, 분야별 분과위원회 두며, 각 분과위원회는 대표를 포함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분과대표는 분과위원회에서 선출하며, 당해 분과를 총괄하고, 제3조제1항의 위원회 위원을 겸임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민행복분과
2. 농촌활력분과
3. 농업소득분과
4. 농생명식품분과
5. 친환경축산분과
6. 수산활력분과
7. 농업기술분과

④ 제2항의 분과위원회 당연직 위원은 “별표1”과 같다.

⑤ 분과위원회 위촉직 위원은 관련 분과 농업인단체, 전문가 등의 추천으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⑥ 각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협의한다.

1. 분과 관련 정책방향 마련 및 신규사업 발굴 등에 관한 사항
2. 분과 관련 제도 개선 및 규제 완화 등에 관한 사항
3. 분과대표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한 사항 등

제6조(특별분과) ① 위원회는 주요 현안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 10명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분과를 둘 수 있으며, 특별분과 대표는 특별분과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사람으로 정한다.

② 특별분과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특별분과 대표는 존속기한 종료 전 활동성과를 포함한 운영상황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 재임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회의참석 저조 등의 사유로 운영협의회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해촉을 요구한 경우

제9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제2호에 따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제3조 및 제5조에 따른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사 업무에서 제척된다.

1.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문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 한 경우
3. 그 밖에 자문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회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소집 등) ① 위원회는 반기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운영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최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분과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 운영협의회 및 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 운영협의회 및 분과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제시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와 운영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2명을 두며, 분과위원회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분과별로 간사 1명을 둔다.

② 위원회 간사는 행정부문은 전라북도 농정협력 업무담당 팀장으로 하고 민간 부문은 운영협의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 중 민간위원장이 추천한 사람으로 하며, 위원회 간사는 운영협의회 간사를 겸임한다.

③ 분과위원회 간사는 분과위원 중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위원으로 한다.

④ 간사는 위원장 및 분과대표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포럼 운영) ① 위원회는 포럼을 운영할 기관·단체를 선정하여 세미나, 심포지엄, 워크숍 등을 운영토록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포럼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민간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전라북도 삼락농정위원

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조치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 [별표 1]

분과위원회의 협업부서 및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협업부서의 국·과장(제5조제4항 관련)

분과명	협업부서	국·과장	비고
농민행복	농업정책과	농업정책과장	
농촌활력	농촌활력과	농촌활력과장	
농업소득	농산유통과	농산유통과장	
농생명식품	농생명식품과	농생명식품과장	
친환경축산	축산과	축산과장	
수산활력	수산정책과	수산정책과장	
농업기술	농업기술원	연구개발국장	

전라북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북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라북도지사 김 관 영 인

2023년 3월 31일

전라북도 조례 제5250호

### 전라북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전라북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전라북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북도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라북도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유지, 문화·예술·축제 활동의 진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다중(多衆)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등과 같은 대규모 행사를 말한다.
2. “공연”이란 「공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3. “축제”란 특정한 날을 기념하고, 주민의 화합과 지역문화를 선양하기 위하여 벌이는 큰 규모의 경축행사를 말한다.
4. “주최”란 옥외행사를 주최·기획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말하며, 그 행사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갖는 것을 말한다.
5. “주관”이란 주최의 의뢰를 받아 옥외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말하며(주최자가 직접 주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주관의 대가는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할 수 있고, 그 행사의 최종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6. “후원”이란 금전의 대가 없이, 옥외행사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거나 권위를 부여해주는 역할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7. “관계인”이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8. “안전관리요원”이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이용 상태와 행사 참여자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관리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1.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관람이 예상되는 실내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행해지는 공연
  2.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으로 예상되는 축제 등의 옥외행사
- ② 제1항 각 호의 공연 또는 옥외행사에서 1,000명 이상의 관람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연법」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법에 따른다.
- ③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입법취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라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도지사와 「전라북도 출자·출연 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이하 “출자·출연 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다른 기관·법인 또는 단체의 옥외행사에 대하여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할 때에는 제6조의 신고를 조건으로 승인하여야 한다.
- ③ 도지사는 도가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옥외 행사비를 지원할 때에는 제6조의 신고를 교부 조건으로 부가하여야 한다.
- ④ 도지사는 주최·주관하는 자가 없고 순간 최대 500명 이상의 인원이 자발적으로 모일 것으로 예측되는 옥외행사의 경우 개최지역의 시장·군수의 요청에 의해 유관 기관 등과 함께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도민의 책무) 전라북도민은 도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업무에 최대한 협조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 등) ①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부서에서는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행사개시 7일 전까지 옥외행사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계획을 안전관리 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행사개최 3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도 또는 출자·출연 기관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도 또는 출자·출연 기관이 후원하는 행사
3. 도가 옥외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②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신고의무가 없는 옥외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자도 안전관리계획이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사일시·장소
2. 행사주최·주관·후원
3. 행사의 주요내용, 출연자, 참여 예정인원 등
4.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임무 및 안전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
5. 현장의 위험요소(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6. 비상시에 해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7.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④ 도지사는 도 관련부서의 장, 관할 시장·군수, 소방서장,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점검과 보완)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행사개시 1일 전까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신고받은 옥외행사
2. 주최·주관하는 자가 없고 순간 최대 500명 이상의 인원이 자발적으로 모임 것으로 예측되는 옥외행사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옥외행사 주최자 및 점검시설의 관계인을 안전점검에 참여시켜야 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 관련부서의 장과 관할 시장·군수 등에게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난예방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옥외행사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옥외행사 종료 시까지 안전관리요원으로 하여금 안전관리 및 재난 예방활동을 계속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관리 지원요청) ① 도지사는 옥외행사장의 안전관리요원 배치 사항을 점검하고,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이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요청을 받은 경찰서장은 주최자와 협의하여 최소한의 교통통제와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고, 안전관리요원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재난예방조치 등) ① 도지사는 옥외행사에 따른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관할 시장·군수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옥외행사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의 결과 재난위험이 높다고 인정하는 때

에는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다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옥외행사를 금지시킬 수 있다.

1. 제3항의 명령을 받은 자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그 밖에 옥외행사 전 또는 옥외행사 중 예상하지 못한 위험요소가 발생하여 예정대로 행사가 진행될 경우 사고발생이 예견되는 때 등

제10조(응급의료 지원 요청) 도지사는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할 대학병원 또는 도립의료원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주최자에 대한 권고사항) ① 도지사는 옥외행사 참여자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보장할 수 없을 경우 그 옥외행사의 중단을 선언할 것을 주최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자발적으로 모인 옥외행사의 경우는 옥외행사 참여자의 해산을 권고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주최자에게 옥외행사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안전관리요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안전관리요원으로 18세 이상의 사람을 임명할 것
2.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임무 등에 대하여 사전 교육을 실시할 것
3. 응급구조를 위한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는 경우 관련 자격증이 있는 자를 배치할 것
4. 참여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완장, 모자, 어깨띠, 상의 등을 착용하게 할 것
5. 배치장소, 임무 등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할 것
6. 옥외행사 종료 시까지 안전관리요원으로 하여금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활동을 계속하도록 하게 할 것

③ 도지사는 주최자에게 재난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 제6조에 따라 재난대처계획을 신고한 자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전라북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북도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라북도지사 김 관 영 원

2023년 3월 31일

전라북도 조례 제5251호

## 전라북도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산에 따른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자동차정비업자와 종사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과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자동차전문정비업, 원동기전문정비업을 말한다.
2. “자동차정비사업자”란 제1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를 말한다.
3. “종사자”란 자동차정비사업자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동차정비업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는 전라북도에 영업장 소재지를 두고 있는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자동차정비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동차 점검·정비, 검사시설 등 시설개선 사업
2. 종사자 정비기술 향상 및 정비 신기술 교육사업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 인프라 구축 사업
4. 자동차정비업 경영안정을 위한 진단 및 상담
5. 그 밖에 도지사가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북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북도 특별교통수단 등의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라북도지사 김 관 영 인

2023년 3월 31일

전라북도 조례 제5252호

**전라북도 특별교통수단 등의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북도 특별교통수단 등의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특정일을 지정하여 특별교통수단을 무료로 운행할 수 있으며, 무료로 운행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장애인의 날
- 2. 노인의 날
- 3. 어린이날
- 4. 가정의 날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북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북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라북도지사 김 관 영 원

2023년 3월 31일

전라북도 조례 제5253호

## 전라북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북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시행령에서 위임된”을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시행령」”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그 밖에 시·도”를 “시·도”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주민공람 공고문 및 공람시 제출의견과 처리결과
2. 시·군 의회 의견청취결과
3. 시·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및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
4. 그 밖의 사업계획(재원 및 추진일정 계획)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4조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시·도”를 “같은 조 제2항제4호에서 “시·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를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그 밖에 시·도”를 “시·도”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옥외광고물 및 게시시설에 관한 사항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재정비촉진지구 지정해제시 정비사업 전환 동의율)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6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과반수를 말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그 밖에 시·도”를 “시·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10호”를

“법 제9조제1항제10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그 밖에 시·도”를 “시·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전라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7조”를 “「전라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7조”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람 중에서 총괄계획가를”을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을 총괄계획가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관련 분야”를 “관련분야”로, “실무 경력”을 “실무경력”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관련분야에서 제1호 내지 제3호”를 “관련분야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동등한”을 “같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도지사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과정에서 시·군 및 토지소유자 등에게 재정비사업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총괄계획가의 위촉 이전에도 관련분야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행정적·기술적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총괄계획가, 관련분야 전문가 등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정해진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종합의료시설
4. 폐기물처리시설
5. 환경오염저감시설
6. 친환경에너지보급시설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수립권자는 사업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재정비촉진계획수립권자가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재정비촉진계획수립권자는 도시·건축·조경·교통·부동산 등 관련분야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④ 사업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사업협의회 업무담당사무관이 되며, 서기는 사업협의회 업무담당자가 된다.
- ⑤ 재정비촉진계획수립권자는 사업협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⑥ 그 밖에 사업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업협의회의 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제2항 중 “도시계획위원회”를 “도시재정비위원회”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증가용적률에 대한 주택건설 비율) 영 제21조의2제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2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교지의 임대료 요율 또는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을 “(학교용지의 임대료 요율 또는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교지”를 “학교용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교지를 매각하는 경우”를 “학교용지를 매각하는 경우 조성원가에 매각하며,”로, “조성원가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률”을 “매각대금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지”를 “학교용지”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주거실태조사)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거주자에 대한 주거실태조사 항목 중 영 제33조제2호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입자 세대 및 세입자의 전입일자
2. 주택유형 및 구조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도시재정비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① 도지사는 법 제34조에 따라 전라북도 도시재정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및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심의대상 용역사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용역에 대한 안전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위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안전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총괄계획가, 총괄사업관리자,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시재정비계획에 관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도지사는 제1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위원과 관련분야 전문가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⑧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소위원회) ①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구성한다.

②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 5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뽑는다.

④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간사 및 서기) 도지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북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북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라북도지사 김 관 영 인

2023년 3월 31일

전라북도 조례 제5254호

### 전라북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열악하고 낙후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 지원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받아 사용 승인된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을 말한다.
- 2. “관리주체”란 소규모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관리단
  - 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경우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대표
- 3. “입주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주택의 소유자
  - 나. 주택의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제3조(도지사의 책무 등) ①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② 도지사는 지원사업에 지역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주민은 지원사업의 계획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사업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수립) ① 도지사는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지원계획의 방향 및 추진 목표
- 2. 사업비 지원계획
- 3. 재정 확보 방안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 대상에 대한 수요조사를 시행하여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① 지원사업 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 이상이 지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사업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 이상이 지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다.

1. 안전점검
2. 담장, 가로등, 보안등, 옥상(방수), 도로·보도, 배수로 등 단지 내 외부공간
3.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등 복리시설
4. 석축, 옹벽, 절개지 등 긴급한 보수가 필요한 시설
5.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된 시설물 보수
6.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타 법령에 따라 정비사업 등으로 사업이 예정된 구역 내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사업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지원신청 및 선정) ① 관리주체 등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청한다.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지사에게 수요조사서를 제출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수요조사서가 제출되면, 이를 검토하여 지원사업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의 점검)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가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게 하고 필요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실적보고) 시장·군수는 지원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보조금 환수)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관련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보고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환수할 때는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북도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북도장학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전라북도지사 김 관 영 원

2023년 3월 31일

전라북도 규칙 제3210호

## 전라북도장학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전라북도장학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전라북도장학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라북도장학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년도”를 “연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해당년도”를 “해당 연도”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을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제7호의 각종학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재학생 :”을 “재학생:”으로, “B학점이상”을 “B학점 이상”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신입생 :”을 “신입생:”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개시”를 “시작”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입사생선발”을 “입사생 선발”로 한다.

제7조제7호 중 “국가보훈기본법”을 “「국가보훈 기본법」”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3호 중 “장애인복지법 제2조”를 “「장애인복지법」 제2조”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기일내”를 “기일 내”로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북도 고시 제2023-88호

## 단평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단평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9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시행계획 승인한 내용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물건의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3년 3월 31일

1. 사업명 : 단평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2. 위치 :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무주군 적상면, 진안군 백운면, 부귀면 일원
3. 사업목적 :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과 재해 사전예방, 수리시설물  
현대화를 통한 시설물의 효율성 증진 및 영농기반 구축
4. 수혜면적 : 278.5ha/4개소
5. 사업개요
  - 수원공
    - 저수지 4개소(비상수문 4개소)
  - 부대공사 : 가설사무소, 시험비, 중기운반 등
6. 사업기간 : 2022. 01. ~ 2025. 12.
7. 총사업비 : 2,681백만원
8.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장
9. 시행계획도서 열람 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전화063-350-7070)
10.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 : 해당없음

전라북도 고시 제2023-93호

## 자연휴양림 조성계획(변경) 고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 조성계획(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3년 3월 31일

### 1. 자연휴양림 조성개요

가. 명 칭 : 데미샘 자연휴양림

나. 위 치 : 전북 진안군 백운면 신암리 산1번지의외 1필

다. 지정면적 : 2,300,000㎡

라. 조성면적 : 48,891.47㎡(변동없음)

### 2. 2023년 자연휴양림 투자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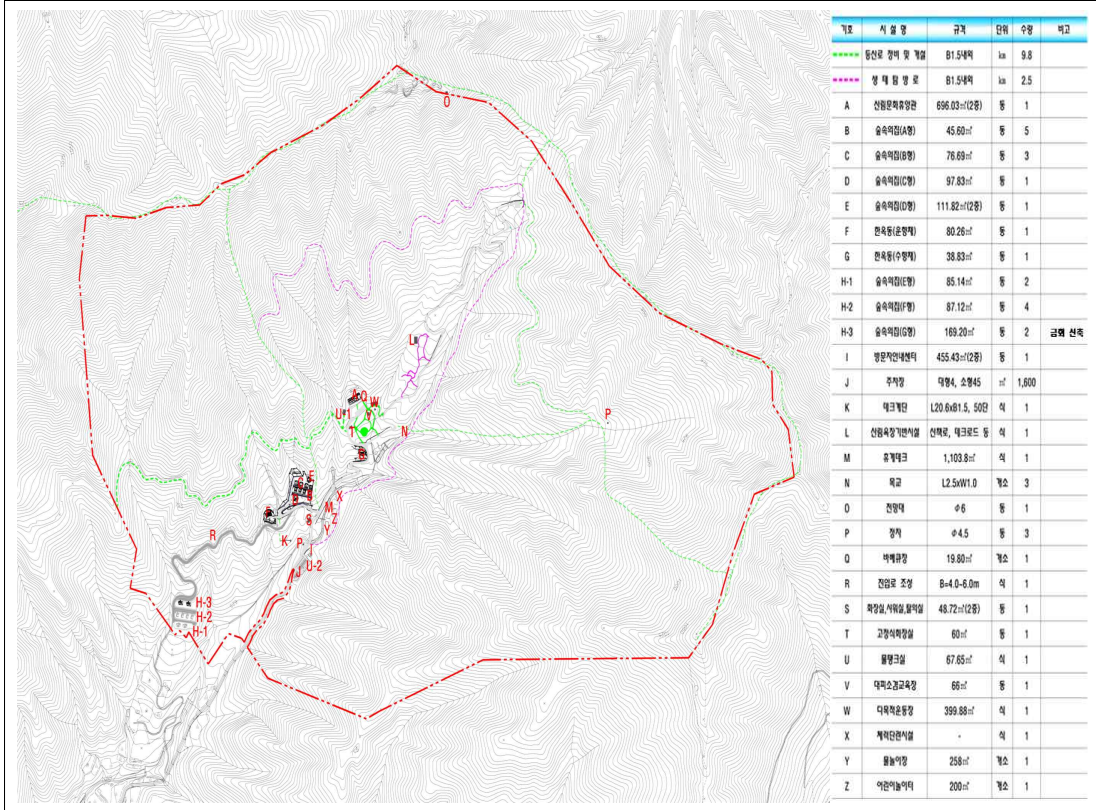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비고
계		1,000	
공정별	공사비	950	
	설계 및 감리비	20	
	기타 부대비	30	

## 3. 자연휴양림 시설계획

구분	시설명	단위	수량			형질변경 면적(㎡)			비고
			당초	변경	증감	당초	변경	증감	
<b>총 계</b>						<b>48,891.47</b>	<b>48,891.47</b>	<b>-</b>	
숙박시설	산림문화휴양관	동	1	1	-	1,554.79	1,554.79		
	숲속의집(A형)	동	5	5	-	6,383.15	6,383.15		
	숲속의집(B형)	동	3	3	-				
	숲속의집(C형)	동	1	1	-				
	숲속의집(D형)	동	1	1	-				
	한옥동(운향채)	동	1	1	-	1,032.16	1,032.16		
	한옥동(수향채)	동	1	1	-	498.28	498.28		
	숲속의집(E형)	동	2	2	-	4,847.50	4,847.50		
	숲속의집(F형)	동	4	4	-				
	숲속의집(G형)	동	-	2	2				
<b>소 계</b>						<b>14,315.88</b>	<b>14,315.88</b>		
편의시설	방문자안내센터	동	1	1	-	356.65	356.65		
	주차장	㎡	1,600	1,600	-	1,600	1,600		
	데크계단	식	1	1	-	-	-		
	산림욕장기반시설	식	1	1	-	800	800		
	휴게데크	식	1	1	-	1,103.80	1,103.80		
	목교	개소	3	3	-	7.50	7.50		
	전망대	동	1	1	-	56.52	56.52		
	정자	동	3	3	-	47.70	47.70		
	바베큐장	개소	1	1	-	19.80	19.80		
	진입로 조성	식	1	1	-	10,547.01	10,547.01		
<b>소 계</b>						<b>14,538.98</b>	<b>14,538.98</b>		
체육시설	대피소겸교육장	동	1	1	-	66.00	66.00		
	등산로 및 입도	km	9.8	9.8	-	14,700	14,700		
	생태탐방로	km	2.5	2.5	-	3,750	3,750		
	<b>소 계</b>						<b>18,516</b>	<b>18,516</b>	
체육시설	다목적운동장	식	1	1	-	399.88	399.88		
	체력단련시설	식	1	1	-	10.4	10.4		
	물놀이장	개소	1	1	-	258.00	258.00		
	야간이글이터	개소	1	1	-	200.00	200.00		
<b>소 계</b>						<b>868.28</b>	<b>868.28</b>		
위생시설	화장실사위집 탈의실	동	1	1	-	90.00	90.00		
	고정식화장실	동	1	1	-	60.00	60.00		
	상수공사	식	1	1	-	178.34	178.34		
		개소	1	1	-	67.65	67.65		
	오수공사	식	1	1	-	256.34	256.34		
<b>소 계</b>						<b>652.33</b>	<b>652.33</b>		
정통시설	잔기설	식	1	1	-				
	통신시설	식	1	1	-				
	<b>소 계</b>						-	-	
안전시설	안전시설	식	1	1	-				
	<b>소 계</b>						-	-	

4. 자연휴양림 시설물 배치도



전라북도 공고 제2023-630호

## 전라북도 한국전통 발효문화산업 투자선도지구 부분준공 공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1001호(2016.12.30.)로 지정된 전라북도 한국전통 발효 문화산업 투자선도지구 중 특정형 지구단위계획구역 기반조성이 완료되어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부분준공 완료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31일  
전라북도지사

### 1. 전체 사업개요

가. 사업명칭 : 전라북도 한국전통 발효문화산업 투자선도지구

나. 위치 :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백산리 578번지 일원

다. 시행자 : 순창군수(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

라. 사업기간 : 2016년 ~ 2023년

마. 전체면적 : 444,089.1㎡

바. 총사업비 : 1,146억원

사. 목적

- 전통 장류산업을 관광과 융·복합된 고부가가치 미래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연구시설, 지원시설 및 공공시설 등을 도입·유치하여 다양한 수익기반과 고용을 창출하고 전통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가능성 제시

### 2. 부분준공 사항

가. 사업명칭 : 전라북도 한국전통 발효문화산업 투자선도지구

나. 위치 :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백산리 578번지 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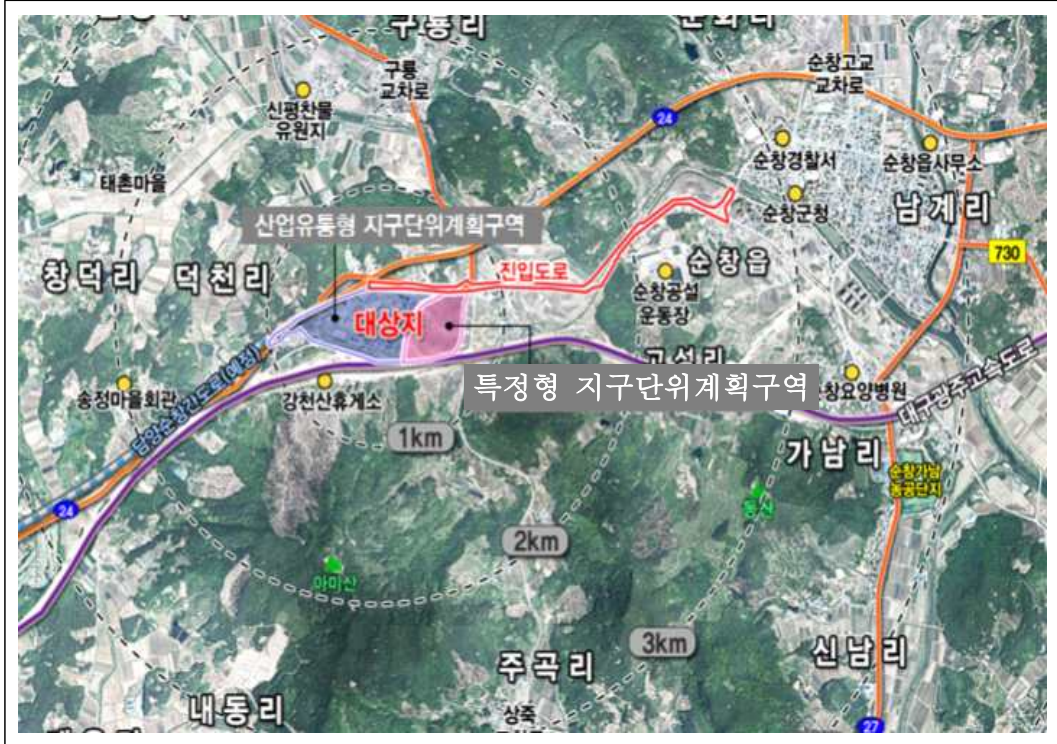
다. 시행자 : 순창군수(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

라. 면적 : 128,625.1㎡ (특정형 지구단위계획구역 기반 조성)

구 분		면적 (㎡)	구성비(%)	지구지정상 용도분류	
총 계		444,089.1	100.0	-	
산업 유통형	소 계		223,733.0	50.4	-
	상업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4,325.0	1.0	지원시설용지
	공업 용지	계	83,462.0	18.8	-
		제1생산단지	49,155.0	11.1	산업시설용지
		제2생산단지	8,705.0	2.0	산업시설용지
		전통절임류세계화 지원센터	7,991.0	1.8	산업시설용지
		발효미생물 산업화지원시설	3,714.0	0.8	산업시설용지
		전통발효식품(장류)전용공장	3,854.0	0.9	산업시설용지
		HACCP메주공장	10,043.0	2.3	산업시설용지
	지원 시설 용지	계	31,807.0	7.2	-
		B2B물류종합지원센터	4,421.0	1.0	지원시설용지
		장내유용미생물은행(연구)	7,847.0	1.8	지원시설용지
		발효미생물관리센터	3,408.0	0.8	지원시설용지
		게스트하우스	2,189.0	0.5	지원시설용지
		토굴형장류절임류저장고	9,248.0	2.1	지원시설용지
		장류원료 저장고	1,940.0	0.4	지원시설용지
		장류체험관	2,754.0	0.6	지원시설용지
	녹지용지	11,807.0	2.7	공공시설용지	
	공공 시설 용지	계	92,332.0	20.8	-
		공공시설	6,360.0	1.4	공공시설용지
주차장		16,202.0	3.6	공공시설용지	
도로		44,036.0	9.9	공공시설용지	
	공원	25,734.0	5.8	공공시설용지	
특정형	소 계		128,625.1	29.0	-
	상업용지	계	24,727.6	5.6	-
		발효슬로시티파크	11,955.2	2.7	지원시설용지
		전통기업문화연수원	10,672.4	2.4	지원시설용지
		음식 및 스토리마켓	2,100.0	0.5	지원시설용지
	문화 체험 시설 용지	계	55,142.4	12.4	-
		월드푸드사이언스관	5,392.8	1.2	지원시설용지
		미생물뮤지엄	3,309.2	0.7	지원시설용지
		전통누룩체험관	4,126.1	0.9	지원시설용지
		추억의 전통식품거리	7,450.3	1.7	지원시설용지
		발효테라피센터	8,056.9	1.8	지원시설용지
		100세다년생화초식물원	7,491.3	1.7	지원시설용지
		세계발효체험농장	9,103.2	2.0	지원시설용지
		문화체험시설	10,212.6	2.3	지원시설용지
	공공 시설 용지	계	38,696.9	8.7	-
		주차장	9,107.7	2.1	공공시설용지
		다목적광장	10,690.5	2.4	공공시설용지
		도로	18,254.7	4.1	공공시설용지
		보행자도로	644.0	0.1	공공시설용지
	녹지용지	10,058.2	2.3	공공시설용지	
진입도로	진입도로	91,731	20.7		

※ 상업용지(24,727.6㎡), 문화체험시설용지(55,142.4㎡)는 건축물을 포함한 부분  
준공이 아닌 기반조성에 대한 부분준공임

○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3.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 (변경없음) “계재생략”

- 투자선도지구 부분준공 관계도서는 전라북도 지역정책과(063-280-3616) 및 순창군 장류산업사업소(063-650-543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임.



전라북도 공고 제2023-640호

## 『전기사업법』 위반 사업자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전기사업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서를 송달한 결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31일  
전라북도지사

### 1. 청문대상 및 처분예정

발전소명 (대표자)	사업장소	처분대상 업종	청문원인	처분 예정	처분근거
에코에너지파크 군산연료전지발전소 (정용호)	전라북도 군산시 오식도동 850-1	전기사업 (연료전지)	전기사업법 제9조 및 제12조에 따라 준비기간에 전기설비 설치 및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고 미이행	허가취소	전기사업법 제12조

2.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2023. 3. 31. ~ 2023. 4. 14.)

### 3. 청문일정

가. 일 시 : 2023년 4월 28일(금) 14시~14시 30분

나. 장 소 : 전라북도청 1층 청문장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호자로 225)

### 4. 청문시 유의사항

가. 만일 청문 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청문 전까지 증빙서류와 함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 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의 진술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5. 청문시 지참사항

- 소명자료, 신분증

6. 자세한 내용은 전라북도 에너지수소산업과(063-280-32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공고 제2023-641호

##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공고

민법 제4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법인의 정관변경을 허가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3. 3. 31.  
전라북도지사

### ▣ 공 고 사 항

1. 허가번호 : 제214호(1994.9.12.)
2. 법 인 명 : 정읍문화원
3. 소 재 지 : 전북 정읍시 조곡천 1길1
4. 대 표 자 : 김영수
5. 설립목적 : 지역사회의 계발 연구조사 및 향토문화 진흥
6. 변경 허가사항
  - (변경) 제6조(이익의 제공), 제44조(본원의 해산)
  - (신설) 제20조(구성) 4항, 제34조의2(기부금의공시)
- ※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7. 변경 허가일자 : 2023. 3. 27

##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p><b>제6조(이익의 제공)</b>            ① 본원의 목적사업 수행에 따라 본원의 시설 이용 또는 프로그램에의 참여, 기타 목적사업의 수행 결과로 파생되는 <u>이익은 회원 또는 일반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실비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u></p>	<p><b>6조(이익의 제공)</b>            ① 본원의 목적사업 수행에 따라 본원의 시설 이용 또는 프로그램에의 참여, 기타 목적사업의 수행결과로 파생되는 <u>수입은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는 불특정 다수로 한다. 다만, 그 실비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u></p>
<p style="text-align: center;"><b>제 4 장 총 회</b></p> <p><b>제20조(구 성)</b>            ① ~ ③ 생략            ④ <u>항 신설</u></p>	<p style="text-align: center;"><b>제 4 장 총 회</b></p> <p><b>제20조(구 성)</b>            ① ~ ③ 생략            ④ <u>총회 의사록 서명은 총회 출석이사 중 총회의 추천을 받은 이사 5명이 대신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b>신 설</b></p>	<p style="text-align: center;"><b>제6장 재정(재산과 회계)</b></p> <p><u>제34조의 2(기부금 공시) 인터넷 누리집 등을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u></p>
<p><b>제 8 장 보 칙</b>  <b>제44조(본원해산)</b>            ① 생략            ② 본원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u>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원과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u></p>	<p><b>제 8 장 보 칙</b>  <b>제44조(본원해산)</b>            ① 생략            ② 본원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u>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u></p>

전라북도 공고 제2023-645호

### 비영리민간단체 대표자 변경 등록공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등록), 같은법 시행령 제3조(등록절차)의 규정에 의거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대표자, 소재지) 변경을 수리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3. 31.

전라북도지사

- 1. 등록번호 : 제2000-1-전라북도-104호
- 2. 단체명칭 : 한국스카우트전북연맹
- 3. 소재지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5길 20, 4층
- 4. 대표자 인적사항
  - 성명 : 권혁
  - 생년월일 : 1955년 5월 28일
  - 주소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주객사3길 46-31
- 5. 주된 사업
  - 청소년에 대한 교육 및 훈련
- 6. 변경 내용

구분	내용		비고
	변경 전	변경 후	
대표자	김윤덕	권혁	
소재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221, 2층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5길 20, 4층	

- 7. 허가(변경)일자 : 2023. 3. 27.

전라북도 공고 제2023-654호

## 제51차 전라북도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고

제51차 전라북도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3년 3월 31일

제51차 심의결과

안전 번호	건축개요		작가	작품명	미술작품 심의결과
	건물명 (건축주)	위치			
271-3	익산 마동 공동주택 (주)한국토지신탁	익산시 마동 산41번지	국**	한글인-가족	적합
285	익산 광신프로그레스 (주)아람주택	익산시 남중동 112-11	김**	염원(念願)	적합
286	완주 모아미래도 센트럴시티 3차 (주)모아종합건설	완주군 용진읍 운곡리 1022-2	이**	한가한 오후	적합
287-1	군산 경남아너스빌 디오션 경남기업(주)	군산시 조촌동 739-70 외 58	정**	물결 별빛 숲	적합
287-2			권**	사랑, 기억합니다	조건부 적합

전라북도 공고 제2023-657호

###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3년 3월 31일

1. 단체명칭 : 대둔산 애(愛) 예술단
2. 등록번호 : 제2023-1-전라북도-6호
3. 대표자 : 김주환
4. 주사무소 : 전라북도 완주군 운주면 운주로 126-2, 1층
5. 주요사업
  - 음악회 봉사활동 및 공연기획
  - 자선공연 모금을 통한 소외계층 기부
6. 등록연월일 : 2023. 3. 21.

전라북도 공고 제2023-659호

## 2023~2024년 도시가스 공급시설 공사계획

□ 시·군별 공사계획

순번	공급권역	공급업체	2023년			2024년		
			구 간 (개소)	관료연장 (m)	공급대상 (세대)	구 간 (개소)	관료연장 (m)	공급대상 (세대)
계		3개사	108	87,253	12,115	54	44,298	10,828
1	전주시	전북도시가스	22	10,062	1,706	7	7,815	1,031
2	군산시	군산도시가스	20	41,630	2,694	8	7,900	1,662
3	익산시	전북에너지서비스	9	7,946	4,185	8	4,650	4,923
4	정읍시	전북에너지서비스	11	7,294	866	8	9,208	1,337
5	남원시	전북도시가스	13	6,795	537	8	4,955	736
6	김제시	전북도시가스	8	1,212	466	1	150	30
7	완주군	전북도시가스	5	4,967	1,243	4	4,900	856
8	무주군	전북도시가스	4	523	132	2	150	11
9	진안군	군산도시가스	1	100	20	2	1,600	50
10	임실군	군산도시가스	2	215	22	1	150	40
11	순창군	전북도시가스	3	160	16	2	120	12
12	고창군	전북도시가스	3	328	45	1	50	10
13	부안군	군산도시가스	7	6,021	183	2	2,650	130

## □ 2023년도 도시가스 공급시설 공사계획

&lt; 전주시 권역 &gt;

【업체명:전북도시가스(주)】

지 역		구분	공사구간	연장 (M)	공사 기간	공급 시기	대상 세대수	비고 (정압기)
시군명	읍면동							
		계	22구간	10,062			1,706	
전주시	삼천동	본관	삼천우성 ~ 삼천신일아파트 이설 중압관로	120	7월	7월		
전주시	서신동	본관	서신동 감나무골(212-4) 중압관로	50	10월	10월		
전주시	효자동	본관	효자동 효자성원맨션 이설 중압관로	80	5월	5월		
전주시	송천동	본관	에코시티 2단계 공동주택 중압관로	377	3~11월	12월		
전주시	송천동	공급관	에코시티 2단계 공동주택 저압관로	373	3~11월	12월		
전주시	송천동	공급관	에코시티 2단계 단독1차 저압관로	836	4~11월	12월		
전주시	송천동	공급관	에코시티 2단계 단독2차 저압관로	1,004	4~11월	12월		
전주시	송천동	공급관	에코시티 2단계 준주거 1차 저압관로	309	5~11월	12월		
전주시	송천동	공급관	에코시티 2단계 준주거 2차 저압관로	139	5~11월	12월		
전주시	금암동	공급관	금암동 벽계가든 저압관로	133	4월	4월		
전주시	덕진동	공급관	덕진동 남성맨션 ~ 오성연립 저압관로	210	4월	4월		
전주시	서서학동	공급관	서서학동 전주남초등학교 LOOP 저압관로	260	4월	4월		
전주시	서신동	공급관	서신동 감나무골(212-4 ~ 288-12) 저압관로	210	10월	10월		
전주시	중화산동	공급관	중화산동 웨딩스퀘어(2가 578-4) LOOP 저압관로	22	4월	4월		
전주시	노송동	공급관	남노송동 전북지방병무청 LOOP 저압관로	60	4월	4월		
전주시	송천동	공급관	송천동 전주에코시티데시앙15블럭 저압분기	6	3~11월	12월	748	
전주시	송천동	공급관	금암동 모아미래도마을루체 저압분기	6	3~11월	8월	98	
전주시	송천동	공급관	효자동 엘르디움 저압분기	3	3~11월	12월	64	
전주시	여의동	공급관	여의동 한국수자원공사(651) 저압관로	62	3월~5월	6월	4	
전주시	전지역	공급관	전주시 소규모 수요관로	1,489	3~11월	6~12월	236	
전주시	전지역	공급관	전주시 소규모 분기공사	2,000	2~12월	2~12월	500	
전주시	전지역	공급관	전주시 단독주택 보조급관로	2,313	6~10월	9~12월	56	



## &lt; 군산시 권역 &gt;

## 【업체명:군산도시가스(주)】

지역		구분	공사구간	연장 (M)	공사 기간	공급 시기	대상 세대수	비고 (정압기)
시군명	읍면동							
		계	20	41,630			2,694	
군산시	옥서면	조정기	옥서면 거사리마을 구역압력조정기	0	6~12월	12월	50	조정기
군산시	산북동	본관	산북동 서군산복합체육센터 주변 본관	140	5~11월	11월	1	
군산시	회현면	본관	회현면 주변 본관	4,595	4~6월	12월	100	
군산시	새만금 산단	본관	새만금산단 2공구 주변 본관	1,050	10~12월	12월	2	
군산시	새만금 산단	본관	새만금산단 5, 6공구 주변 본관	6,550	10~12월	12월	3	
군산시	오식도 동	본관	5부두 주변 본관	2,000	6~8월	8월	0	
군산시	오식도 동 외	본관	기타산업단지 본관	40	3~12월	4~12월	3	
군산시	시일원	본관	분기공사	200	3~12월	4~12월	100	
군산시	지곡동	공급관	지곡동 호수공원 아이파크 주변 공급관	630	4~7월	11월	665	
군산시	문화동	공급관	문화동 549-12 주변 공급관	50	5~7월	7월	40	
군산시	수송동	공급관	수송동 877-7 주변 공급관	30	4~5월	5월	5	
군산시	오룡동	공급관	오룡동 900-40 고령자복지주택 주변 공급관	190	5~11월	11월	150	
군산시	대명동	공급관	대명동 138-3 주변 공급관	80	4~7월	7월	1	
군산시	나운동	공급관	은과 호수공원 음식단지 주변 공급관	1,150	4~7월	7월	205	
군산시	성산면	공급관	성산면 주변 공급관	4,680	7~12월	7~12월	90	
군산시	시일원	공급관	군산시 단독주택 보조급사업	9,025	4~12월	4~12월	228	
군산시	구암동	공급관	구암동 새뜰마을 사업	1,200	6~11월	12월	46	
군산시	옥서면	공급관	옥서면 일원 주변 공급관	8,320	2~12월	5~12월	400	
군산시	시일원	공급관	소규모 관로	1,100	3~12월	3~12월	360	
군산시	시일원	공급관	분기공사	600	3~12월	3~12월	245	

< 익산시 권역 >

【업체명:전북에너지서비스(주)】

지역		구분	공사구간	연장(M)	공사기간	공급시기	대상세대수	비고(정압기)
시군명	읍면동							
		계	9	7,946			4,185	
익산시	시내권	공급관	소규모(10m이하)	505	4~11월	4~12월	544	
익산시	시내권	공급관	소규모(10m초과)	265	4~11월	4~12월	82	
익산시	시내권	공급관	중대규모(50m초과)	375	4~11월	4~12월	72	
익산시	평화동	공급관	2023년 평화동새뜰마을 보조사업	985	5~6월	6~7월	30	
익산시	시내권	공급관	2023년 단독주택 공급배관 보조사업	1,502	6~11월	7~12월	110	
익산시	춘포면	공급관	팔봉장레식장~더반포레아파트 2단계 미공급지역	3,674	4~11월	12월	823	1
익산시	어양동	공급관	어양동 도시형생활주택	430	8~9월	10월	284	
익산시	마동	공급관	마동 익산제일풍경채셴트럴파크	80	6~11월	12월	1,566	1
익산시	왕궁면	공급관	왕궁면 익산푸르지오더퍼스트	130	5~6월	7월	674	1

< 정읍시 권역 >

【업체명:전북에너지서비스(주)】

지역		구분	공사구간	연장(M)	공사기간	공급시기	대상세대수	비고(정압기)
시군명	읍면동							
		계	11	7,294			866	
정읍시	신태인읍	공급관	신태인 공급배관공사 1단계	1,565	4~7월	7월		1
정읍시	시내권	공급관	2023년 미공급지역 공급배관 보조사업	1,551	6~9월	11월		
정읍시	시내권	공급관	2023년 단독주택 공급배관 보조사업	2,250	7~10월	11월	150	
정읍시	수성동	공급관	수성 LH행복주택 지압관로	246	6월	7월	98	

정읍시	상평동	공급관	상평동 56-52 ~ 56-92번지간 저압관로(중)	215	7월	8월	2
정읍시	신정동	공급관	신정동 1501-7 ~ 1516-1번지간 중압관로(중보)	529	7월	8월	7
정읍시	상동	공급관	상동 967 ~ 산35-1번지간 저압관로(중)	195	3월	5월	388
정읍시	북면	공급관	북면 태곡리 935 ~ 935-1번지간 중압관로(소)	98	3월	5월	1
정읍시	시내권	공급관	소규모(10m이하)	105	4~12월	4~12월	87
정읍시	시내권	공급관	소규모(10m초과)	428	4~12월	4~12월	103
정읍시	시내권	공급관	중대규모(100m초과)	112	4~12월	4~12월	30

## &lt; 남원시 권역 &gt;

## 【업체명:전북도시가스(주)】

지역		구분	공사구간	연장(M)	공사기간	공급시기	대상세대수	비고(정압기)
시군명	읍면동							
		계	13	6,795			537	
남원시	향교동	공급관	향교동 향교 주변 저압관로	2,095	9~11월	12월	212	
남원시	조산동	공급관	조산동 휴먼시아 동측 저압관로	950	9~11월	12월	73	
남원시	월락동	공급관	월락동 풍산누리안 북측 저압관로	500	8~10월	11월	24	
남원시	왕정동	공급관	왕정동 건강보험공단 서측 저압관로	355	7~8월	9월	28	
남원시	죽향동	공급관	죽향동 동림빌딩 주변 저압관로	95	6월	7월	9	
남원시	동충동	공급관	동충동 남원여인숙 주변 저압관로	80	6월	7월	7	
남원시	도통동	공급관	도통동 산수추어탕 주변 저압관로	65	6월	7월	5	
남원시	노암동	공급관	노암동 노암3통경로당 주변 저압관로	1,680	7~10월	11월	119	
남원시	향교동	공급관	향교동 세무서사거리~구암택지 주변 저압관로	375	9~10월	11월	40	
남원시	신정동	공급관	신정동 오뚜그란데2차 북측 저압관로	100	11월	11월		

남원시	향교동	공급관	향교동 중앙하이츠~축천교 저압관로	110	8월	9월		
남원시	향교동	공급관	향교동 세무서사거리~구암택지 저압관로	290	10월	11월		
남원시	전지역	공급관	남원시 소규모 분기공사	100	4~11월	5~12월	20	

< 김제시 권역 >

【업체명:전북도시가스(주)】

지역		구분	공사구간	연장 (M)	공사 기간	공급 시기	대상 세대수	비고 (정압기)
시군명	읍면동							
		계	8	1,212			466	
김제시	백산면	공급관	백산면 지평선산단 랜드솔루션(주) 중압관로	240	3월	3월	1	
김제시	신평동	공급관	신평동 오베르힐아파트 저압관로	70	10월	12월	67	
김제시	검산동	공급관	검산동 이지움아파트 저압분기	6	9월	12월	188	
김제시	요촌동	공급관	요촌동 백강엠피스아파트 저압분기	8	9월	12월	147	
김제시	검산동	공급관	검산동 어린이공원1 일원 저압관로	90	6월	8-12월	6	
김제시	요촌동	공급관	요촌동 터미널인근 저압관로	395	6월	8-12월	11	
김제시	요촌동	공급관	요촌동 화동길 일원 저압관로	253	9월	11-12월	16	
김제시	전지역	공급관	김제시 소규모 분기공사	150	3~12월	4~12월	30	

< 완주군 권역 >

【업체명:전북도시가스(주)】

지역		구분	공사구간	연장 (M)	공사 기간	공급 시기	대상 세대수	비고 (정압기)
시군명	읍면동							
		계	5	4,967			1,243	
완주군	삼례읍	공급관	완주삼례 행복주택 저압분기	17	5월	9월	300	
완주군	삼례읍	공급관	완주삼봉 중흥S클래스에듀파크 저압분기	14	10월	12월	634	

완주군	진지역	공급관	완주군 소규모 수요관로	300	5~11월	6~12월	50	
완주군	진지역	공급관	완주군 소규모 분기공사	500	2~12월	2~12월	150	
완주군	진지역	공급관	완주군 단독주택 보조급관로	4,136	4~10월	10~12월	109	

< 무주군 권역 >

【업체명:전북도시가스(주)】

지역		구분	공사구간	연장(M)	공사기간	공급시기	대상세대수	비고(정압기)
시군명	읍면동							
		계	4	523			132	
무주군	무주읍	공급관	군립요양병원 저압관로	253	10~12월	4~12월	2	
무주군	무주읍	공급관	북함문화도서관 저압관로	20	10~12월	4~12월	1	
무주군	무주읍	공급관	수푸름아파트 주변 저압관로	150	2~5월	4~12월	119	
무주군	무주읍	공급관	무주읍 분기공사 및 소규모 관로	100	2~12월	4~12월	10	

< 진안군 권역 >

【업체명:군

산도시가스(주)】

지역		구분	공사구간	연장(M)	공사기간	공급시기	대상세대수	비고(정압기)
시군명	읍면동							
		계	1	100			20	
진안군	군일원	공급관	분기공사 및 소규모관로	100	3~12월	3~12월	20	

## &lt; 임실군 권역 &gt;

## 【업체명:군산도시가스(주)】

지역		구분	공사구간	연장 (M)	공사 기간	공급 시기	대상 세대수	비고 (정압기)
시군명	읍면동							
		계	2	215			22	
임실군	임실읍	공급관	임실읍 이도리 264-1 주변	190	5~6월	6월	12	
임실군	군일원	공급관	분기공사 및 소규모관로	25	2~12월	2~12월	10	

## &lt; 순창군 권역 &gt;

## 【업체명:전북도시가스(주)】

지역		구분	공사구간	연장 (M)	공사 기간	공급 시기	대상 세대수	비고 (정압기)
시군명	읍면동							
		계	3	160			16	
순창군	순창읍	공급관	순창읍 순창시장 저압관로	30	6~8월	7월	5	
순창군	순창읍	공급관	순창읍 순정축협 저압관로	30	6~8월	7월	1	
순창군	순창읍	공급관	순창읍 소규모 분기공사	100	6~11월	7~12월	10	

## &lt; 고창군 권역 &gt;

## 【업체명:전북도시가스(주)】

지역		구분	공사구간	연장 (M)	공사 기간	공급 시기	대상 세대수	비고 (정압기)
시군명	읍면동							
		계	3	328			45	
고창군	고수면	공급관	고수면 봉산마을 진입로 이설 중압관로	188	5월	5월	-	
고창군	읍내리	공급관	고창읍 읍내리 예담원룸 저압관로	90	3월	4월	35	
고창군	고창읍	공급관	고창읍 소규모 분기공사	50	3~12월	4~12월	10	

< 부안군 권역 >

【업체명:군산도시가스(주)】

지역		구분	공사구간	연장 (M)	공사 기간	공급 시기	대상 세대수	비고 (정압기)
시군명	읍면동							
		계	7	6,021			183	
부안군	부안읍	공급관	봉신, 송정, 송학, 오정마을 주변 공급관	3,760	4~10월	11월	112	
부안군	부안읍	공급관	선은마을 주변 공급관	1,710	4~10월	11월	34	
부안군	부안읍	공급관	부안 복합커뮤니티센터 주변 공급관	66	4~5월	6월	12	
부안군	부안읍	공급관	부안 종합가족센터 주변 공급관	265	4~5월	6월	3	
부안군	부안읍	공급관	부안 서림고등학교 주변 공급관	60	7~11월	11월	1	
부안군	부안읍	공급관	부안중학교 주변 공급관	60	7~11월	11월	1	
부안군	군일원	공급관	분기공사 및 소규모관로	100	2~12월	2~12월	20	

□ 2024년도 도시가스 공급시설 공사계획

< 전주시 권역 >

【업체명:전북도시가스(주)】

지역		구분	공사구간	연장 (M)	공사 기간	공급 시기	대상 세대수	비고 (정압기)
시군명	읍면동							
		계	7	7,815			1,031	
전주시	덕진동	공급관	덕진동 거성경기장이파트 ~ 덕진행복주택 저압관로	280	5월	5월		
전주시	중화산동	공급관	중화산동 사인빌 ~ 화심순두부 저압관로	180	5월	5월		
전주시	서완산동	공급관	서완산동 골드클래스 ~ 바월교회 저압관로	25	5월	5월		
전주시	반월동	공급관	세움벨리피아3차 저압관로	130	8월	12월	181	
전주시	전지역	공급관	전주시 소규모 수요관로	1,200	5~11월	6~12월	200	
전주시	전지역	공급관	전주시 소규모 분기공사	2,000	2~12월	2~12월	500	
전주시	전지역	공급관	전주시 단독주택 보조급관로	4,000	5~10월	7~11월	150	

## &lt; 군산시 권역 &gt;

## 【업체명:군산도시가스(주)】

지역		구분	공사구간	연장 (M)	공사 기간	공급 시기	대상 세대수	비고 (정압기)
시군명	읍면동							
		계	8	7,900			1,662	
군산시	오식도동	본관	새만금산업단지 주변 본관	1,000	4~11월	5~12월	3	
군산시	조촌동	본관	조촌동 경남아너스빌 주변 본관	100	3~7월	8월	878	정압기 포함
군산시	미룡동	본관	미룡동 오투그란테 주변 본관	450	3~8월	9월	399	정압기 포함
군산시	오식도동	본관	군산국가산업단지	500	4~11월	5~12월	2	
군산시	시일원	본관	분기공사	50	4~12월	5~12월	60	
군산시	시일원	공급관	공급시설 보조금 관로	5,000	5~11월	12월	120	
군산시	시일원	공급관	소규모 관로	500	3~12월	3~12월	100	
군산시	시일원	공급관	분기공사	300	3~12월	3~12월	100	

## &lt; 익산시 권역 &gt;

## 【업체명:전북에너지서비스(주)】

지역		구분	공사구간	연장 (M)	공사 기간	공급 시기	대상 세대수	비고 (정압기)
시군명	읍면동							
		계	8	4,650			4,923	
익산시	시내권	공급관	소규모(10m이하)	500	4~11월	4~12월	300	
익산시	시내권	공급관	소규모(10m초과)	250	4~11월	4~12월	50	
익산시	시내권	공급관	중대규모(50m초과)	400	4~11월	4~12월	150	
익산시	시내권	공급관	2024년 단독주택 보조사업	2,200	6~11월	7~12월	120	
익산시	삼기면	공급관	삼기면 행복주택	530	8~11월	7~12월	200	
익산시	송학동	공급관	송학동 공공지원민간임대	390	3~5월	6월	866	
익산시	마동	공급관	마동 익산제일풍경채센트럴파크	80	6~7월	8월	1,566	1
익산시	부송동	공급관	부송4지구 택지개발	300	6~11월	12월	1,671	



< 정읍시 권역 >

【업체명:전북에너지서비스(주)】

지역		구분	공사구간	연장 (M)	공사 기간	공급 시기	대상 세대수	비고 (정압기)
시군명	읍면동							
		계	8	9,208			1,337	
정읍시	신태인읍	공급관	신태인 공급배관공사 2단계	4,172	4~7월	7월	675	
정읍시	시내권	공급관	2024년 미공급지역 공급배관 보조사업	1,551	6~9월	11월		
정읍시	시내권	공급관	20234 단독주택 공급배관 보조사업	2,250	7~10월	11월	150	
정읍시	농소동	공급관	농소동 90-7외 공동주택 중압배관	90	10월	11월	140	
정읍시	연지동	공급관	연지동 37-1외 공동주택 저압배관	500	8월	9월	152	
정읍시	시내권	공급관	소규모(10m이하)	105	4~12월	4~12월	87	
정읍시	시내권	공급관	소규모(10m초과)	428	4~12월	4~12월	103	
정읍시	시내권	공급관	중대규모(100m초과)	112	4~12월	4~12월	30	

< 남원시 권역 >

【업체명:전북도시가스(주)】

지역		구분	공사구간	연장 (M)	공사 기간	공급 시기	대상 세대수	비고 (정압기)
시군명	읍면동							
		계	8	4,955			736	
남원시	월락동	공급관	월락동 유담유블레스 주변 저압관로	90	11월	12월	359	
남원시	신정동	공급관	신정동 칠승마을 주변 저압관로	1,550	11월	12월	117	
남원시	노암동	공급관	노암동 명지3차 남측 저압관로	1,285	4~11월	12월	79	
남원시	죽향동	공급관	죽향동 행정복지센터 주변 저압관로	1,210	4~11월	12월	123	
남원시	동충동	공급관	동충동 용성초 서측 저압관로	370	4~11월	12월	20	
남원시	금동	공급관	금동 벨라지오3차 동측 저압관로	100	4~11월	12월	8	
남원시	월락동	공급관	월락동 좋은어린이집 주변 저압관로	250	4~11월	12월	10	
남원시	전지역	공급관	남원시 소규모 분기공사	100	4~11월	5~12월	20	

< 김제시 권역 >

【업체명:전북도시가스(주)】

지역		구분	공사구간	연장 (M)	공사 기간	공급 시기	대상 세대수	비고 (정압기)
시군명	읍면동							
		계	1	150			30	
김제시	전지역	공급관	김제시 소규모 분기공사	150	3~12월	4~12월	30	

< 완주군 권역 >

【업체명:전북도시가스(주)】

지역		구분	공사구간	연장 (M)	공사 기간	공급 시기	대상 세대수	비고 (정압기)
시군명	읍면동							
		계	4	4,900			856	
완주군	봉동읍	공급관	봉동지역주택조합아파트 저압관로	100	9월	12월	516	
완주군	전지역	공급관	완주군 소규모 수요관로	300	5~11월	6~12월	50	
완주군	전지역	공급관	완주군 소규모 분기공사	500	2~12월	2~12월	150	
완주군	전지역	공급관	완주군 단독주택 보조금관로	4,000	5~10월	9~12월	140	

< 무주군 권역 >

【업체명:전북도시가스(주)】

지역		구분	공사구간	연장 (M)	공사 기간	공급 시기	대상 세대수	비고 (정압기)
시군명	읍면동							
		계	2	150			11	
무주군	무주읍	공급관	생활SOC 복합시설 저압관로	50	3~12월	4~12월	1	
무주군	무주읍	공급관	무주읍 소규모 분기공사	100	2~12월	3~12월	10	

## &lt; 진안군 권역 &gt;

【업체명:군산도시가스(주)】

지역		구분	공사구간	연장 (M)	공사 기간	공급 시기	대상 세대수	비고 (정압기)
시군명	읍면동							
		계	2	1,600			50	
진안군	군일원	공급관	공급시설 보조금 관로	1,500	4~7월	8월	30	
진안군	군일원	공급관	분기공사 및 소규모 관로	100	4~12월	4~12월	20	

## &lt; 임실군 권역 &gt;

【업체명:군산도시가스(주)】

지역		구분	공사구간	연장 (M)	공사 기간	공급 시기	대상 세대수	비고 (정압기)
시군명	읍면동							
		계	1	150			40	
임실군	군일원	본관	분기공사 및 소규모 관로	150	4~11월	5~12월	40	

## &lt; 순창군 권역 &gt;

【업체명:전북도시가스(주)】

지역		구분	공사구간	연장 (M)	공사 기간	공급 시기	대상 세대수	비고 (정압기)
시군명	읍면동							
		계	2	120			12	
순창군	순창읍	본관	장내유용미생물은행 중압분기공사	20	3~5월	7월	2	
순창군	순창읍	공급관	순창읍 소규모 분기공사	100	6~11월	7~12월	10	

## &lt; 고창군 권역 &gt;

【업체명:전북도시가스(주)】

지역		구분	공사구간	연장 (M)	공사 기간	공급 시기	대상 세대수	비고 (정압기)
시군명	읍면동							
		계	1	50			10	
고창군	고창읍	공급관	고창읍 소규모 분기공사	50	3~12월	4~12월	10	

&lt; 부안군 권역 &gt;

【업체명:군산도시가스(주)】

지역		구분	공사구간	연장 (M)	공사 기간	공급 시기	대상 세대수	비고 (정압기)
시군명	읍면동							
		계	2	2,650			130	
부안군	군일원	공급관	공급시설 보조금 관로	2,500	4~8월	9월	90	
부안군	군일원	공급관	분기공사 및 소규모 관로	150	4~11월	5~12월	40	

전라북도 공고 제2023-661호

### 기부금품 모집등록 공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3년 3월 31일

■ 공 고 사 항

1. 등록번호 : 제2023-04호
2. 모 집 자 : (사)어독스(대표 엄지영)
3. 모집목적 : 유기동물의 보호와 예방접종 및 치료 후 새로운 입양자를 찾아 주기 위함
4. 모 집 액 : 금100,000,000원(금일억원)
5. 모집금품 : 현금
6. 모집기간 : 2023. 4. 2. ~ 2024. 4. 1.
7. 사용기간 : 2023. 4. 6. ~ 2025. 4. 2.
8. 모집지역 : 전국
9. 모집방법 : 온라인 모금, 후원 모금 등  
\* 사무실 소재지 : 김제시 중앙로 175

전라북도 공고 제2023-662호

### 제399회 임시회에 제출할 조례안 공고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라 도의회 제399회 임시회에 제출할 조례안을 공고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3년 3월 31일

연번	조례안명	소관부서 (담당자)
1	전라북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교육협력추진단 성지연(063-280-4346)

※ 문의처 :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 등은 소관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3. 3.  
 제출 자 : 전라북도지사  
 제안설명자 : 교육소통협력국장

1. 제안이유

여성가족부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전라북도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의 지원대상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제1호)  
 -전라북도 여성청소년 지원 대상 연령을 당초 만 11세 이상 만 18세 이하에서 9세 이상 24세 이하 여성청소년으로 지원대상 연령확대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청소년기본법」, 「행정기본법」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다. 관계부서 협의 : 기업애로해소지원단, 감사관, 인권담당관, 법무행정과, 여성가족과
- 라.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해당없음
- 마.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기간 : 2023. 2. 17. ~ 3. 9.(20일간)

4. 전라북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전라북도 조례 제 호

전라북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만 11세”를 “9세”로, “만 18세”를 “24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여성청소년”이란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11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	1. ----- ----- 9세 ----- 24세 ----- -----.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 붙임 1

## 관련 법령

## □ 청소년 기본법

○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 □ 청소년복지지원법

○ 제5조(건강한 성장지원)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한다. <신설 2017. 12. 12., 2021. 4. 20.>

- ④ 제1항에 따른 시책의 마련, 제2항에 따른 건강·체력 기준의 설정·보급 및 제3항에 따른 생리용품 지원의 기준·범위, 방법, 신청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 12., 2021. 4. 20.>

## □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 제3조의2(생리용품 지원의 대상과 방법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사람의 가구원인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용품을 지원한다. <개정 2022. 4. 1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의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4.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생리용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 행정기본법

○ 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 붙임 2

## 비용추계서

## 1. 비용 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lt;전라북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개정안&gt;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청소년”이란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9세 이상 만 24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
2. “생리용품”이란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제품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및 방법 등) ①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은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비슷한 사유로 지원 정책을 시행하여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나. 비용 발생요인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대상 확대(국고보조사업)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대상자 범위가 만 11세~만 18세에서 “만 9세 이상 ~ 만 24세 이하”로 확대

## 2.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가. &lt;현행&gt; '23년도 여성가족부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자격기준」과 「연령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만 9세~24세 여성 청소년
  - (자격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가구
  - (연령기준) 만 9세~ 24세 ('23년 기준)
- 사업비 : 1,640백만원 (국비 820,000천원 도비 328,000천원 시군비 492,000천원)
  - \* 예산 부담비율 : 국비 50%, 도비 20%, 시군비 30%
  - (산출내역) 14,394명(행복e음 추출 14,394명의 약73%) × 156천원
- 사업내용 : 청소년 위생용품 현물 12개월분 바우처 지원
- 지원단가 : 1인 월 13,000원 / 연 156천원
  - \* '23년도 여성가족부 지원단가 적용

## 3. 비용추계 결과

(단위 : 백만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합계		1,640	1,640	2,296	2,296	2,296	10,168
국비		820	820	1,148	1,148	1,148	5,084
도비		328	328	820	820	820	3,116
시군비		492	492	328	328	328	1,968

※ 보건위생용품 지원단가 및 여성청소년 대상인원에 따라 예산변동 될 수 있음

## 4. 재원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합 계	1,640	1,640	1,640	1,640	1,640	8,200
국 비	820	820	820	820	820	4,100
도 비	328	328	328	328	328	1,640
시 군 비	492	492	492	492	492	2,460

**<현행>** '23년도 여성가족부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사업

## 5. 작성자

- 교육협력추진단 지방행정주사보 성지연(063-280-4346)

## 도지사 지시사항

◇ 2023. 3. 24.(금) 17:00 간부회의 시

관리 번호	지시 제목	지시 내용
2023-16	도지사와 함께하는 스터디모임 시범운영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도지사와 직원들이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스터디모임을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기 바람.</li> <li>* 경북도청 : 화공 굿모닝 특강(화요일에 공부하자 / 대학총장, 연구기관장, 기업대표 등 전문가 초빙)</li> </ul> <p style="text-align: right;">(주관 : 총무과)</p>
2023-17	대광법, 의전원법 현안법안 통과 총력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광법과 관련하여 국토부와 기재부 반대로 심사 보류되어 28일 재상정 논의할 예정이므로, - 대광법안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기재부를 잘 설득하여 총력 대응하기 바람.</li> <li>○ 국립의전원법도 4월 국회 임시회에서 상정 통과될 수 있도록 대응 활동을 펼치는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li> </ul> <p style="text-align: right;">(주관 : 교통정책과, 보건의료과)</p>
2023-18	이차전지 특화단지 공모 대응 철저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p style="text-align: center;"><b>〈 GEM코리아뉴에너지머티리얼즈(주) 투자협약 〉</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개사 합작 : GEM(49%), 에코프로머티리얼즈(25.5%), SK온(25.5%)</li> <li>- 이차전지 전구체, 새만금산단 6공구 1조2천억원 투자 1,124명 고용</li> </ul>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GEM코리아뉴에너지머티리얼즈 합작법인의 1조 2천억 투자 결정을 계기로 이차전지 특화단지 공모 지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li> <li>- 이차전지 특화단지는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등 전라북도의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으므로,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대응하기 바람.</li> </ul> <p style="text-align: right;">(주관 : 미래산업과)</p>
2023-19	한일관계 개선에 따른 투자 확대 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통령 방일을 계기로 향후 한일관계가 개선되면 도내 대일 수출기업에게 좋은 기회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됨.</li> <li>- 한일 합작 기업이나 도내에 들어와 있는 일본 기업 등을 대상으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li> <li>- 아울러 5월 중에 개최 예정인 한일경제인회의에서 전라북도 및 전라북도 기업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바람.</li> </ul> <p style="text-align: right;">(주관 : 기업유치추진단)</p>
2023-20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준비 등 대책 철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에서 유입된 황사 영향으로 전국 대기질이 대체로 악화되고 있음.</li> <li>- 환경부장관이 발령하는 위기경보에 따라 재난대응 필요시 언제든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일사분란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li> </ul> <p style="text-align: right;">(주관 : 생활환경과 / 협조 : 사회재난과)</p>

관리 번호	지시 제목	지시 내용
2023-21	세계잼버리대회참가자 기념식수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잼버리대회 기간 참가 청소년들이 자신의 이름표가 걸린 나무를 심는 행사를 추진하게 되면 참가 청소년들에게 기억에 남는 행사가 될 것임.</li> <li>- 새만금청, 산림청 등 사업과 연계하여 나무를 심을 부지, 수종 등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 검토하기 바람.</li> </ul> <p style="text-align: right;">(주관 : 새만금개발과 / 협조 : 자치행정과)</p>
	당면·현안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지방소멸 대응 지역특화 랜드마크 사업 발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2일 간부회의 시 지역소멸 대응 랜드마크 사업 발굴을 지시했으나 실국 피드백이 없었음.</li> <li>- 기업유치지원실, 미래산업국, 농생명축산식품국, 새만금해양수산국은 경제부지사 주재로 랜드마크 관련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고 대응책을 마련하여 전라북도가 랜드마크 프로젝트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li> <li>* 은퇴마을</li> </ul> <p style="text-align: right;">(주관 : 기업유치지원실, 건설교통국, 미래산업국, 농생명축산식품국, 새만금해양수산국)</p> </li> <li>○ <b>제2차 공공기관 이전 대응 협조</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차 공공기관 유치와 관련하여 현재 실국장 책임제를 통해 실국별 이전 대상기관에 방문하고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는 등 적극 대응이 필요함.</li> <li>- 해당 대상기관과 소통하여 반응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철저히 세우기 바람.</li> </ul> <p style="text-align: right;">(주관 : 정책기획관 / 협조 : 기업유치지원실, 문화체육관광국, 복지여성보건국, 건설교통국, 농생명식품축산국)</p> </li> <li>○ <b>출장결과 신속보고 및 기록 유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휘부 참여회의·현장행정 등 출장 결과가 공유되지 않고 있는데, 시급한 경우 카톡으로 보고하는 등 보고체계 속도를 올리고 중요회의는 기록으로 남기기 바람.</li> </ul> <p style="text-align: right;">(주관 : 전 실·국)</p> </li> </ul>

군산시 고시 제2023 - 42호

## 군산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3-468호선)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군산시 신평동 939-18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3-468호선)사업 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3월 31일  
군 산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군산시 신평동 939-18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나. 명 칭 : 소로3-468호선 도로개설공사
3. 사업의 규모 및 면적 : 소로3-468호선, L=75m, B=6m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가. 사업시행자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 나. 사업시행자 성명 : 군산시장(안전총괄과)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25. 12. 30.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번호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m <sup>2</sup> )	편입예정면적(m <sup>2</sup>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내용	
1	군산시 신평동	939-18	대	179.3	179.3		군산시				
2		939-22	대	48.5	48.5		군산시				
3		939-4	전	43.3	43.3		군산시				
4		939-21	대	90.8	90.8		군산시				
5		939-16	대	107.4	107.4		군산시				
6		892-146	도	1049.8	31.3		군산시				
합계		6필지		1519.1	500.6						

군산시 고시 제2023 - 49호

## 군산 도시계획시설(군산대학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군산시 미룡동 290-2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군산대학교)사업에 대하여 변경 사항이 발생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3월 31일

군 산 시 장

1. 사업시행지 : 군산시 미룡동 290-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군산 도시계획시설(학교:군산대학교)사업
  - 나. 명 칭 : 군산대학교 내 디지털정보관 증축사업
3. 사업의 면적 또는 개요
  - 가. 부지면적 : 801,900㎡
  - 나. 사업개요 : 군산대학교 디지털정보관 증축(지상1층 ~ 지상3층)  
- 건축면적 2475.34㎡, 연면적 8,866.06㎡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가. 주 소 : 군산시 대학로 558(미룡동)
  - 나. 성 명 : 군산대학교 총장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고시일로부터 ~ 2024. 12. 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등의 조서 : 붙임참조
7. 관계도서 : 게재생략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가. 총 편입 토지 총괄표

구 분	합 계		구성비 (%)	국,공유지		사 유 지		비 고
	필지수	면적(m <sup>2</sup> )		필지수	면적(m <sup>2</sup> )	필지수	면적(m <sup>2</sup> )	
총 계	81	801,900	100%	58	795,963	23	5,937	
대 지	7	1,819	0.23%	4	1,112	1	59	
도 로	27	3,918	0.49%	23	3,709	4	209	
전	13	5,376	0.67%	9	2,240	6	3,784	
답	5	4,261	0.53%	4	4,232	1	29	
임 야	20	21,134	2.64%	11	19,677	9	1,457	
학 교	6	763,920	95.26%	6	763,920	-	-	
구 거	3	1,472	0.18%	1	1,073	2	399	

나. 편입토지 조서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적면적 (m <sup>2</sup> )	편입면적 (m <sup>2</sup> )	소유자		비고
	읍면동	지번	지목	성명			주소		
	총계				871,867	801,900			
1	미룡동	290	2	학	467,665	460,065	국(교육부)		국학
2	미룡동	303	3	답	2,487	2,487	국(교육부)		국답
3	미룡동	315	5	도	25,237	117	군산시		국도
4	미룡동	350	7	도	23	18	국(교육부)		국도
5	미룡동	454	2	도	519	7	군산시		국도
6	미룡동	457	6	도	328	268	국(교육부)		국도
7	미룡동	458	13	도	47	43	국(교육부)		국도
8	미룡동	461	2	도	906	3	국(농수산부)		국도
9	미룡동	461	10	도	25	1	국(교육부)		국도
10	미룡동	660	14	대	2,273	59	한수용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 527	사대
11	미룡동	667	6	도	60	60	전기풍	전라북도 군산시 미룡동	사도
12	미룡동	668	2	도	693	657	국(교육부)		국도
13	미룡동	692	2	도	23	23	김병옥	전라북도 군산시 미룡동 394	사도
14	미룡동	697	2	도	10	10	국(교육부)		국도
15	미룡동	699		학	6,517	6,517	전라북도(교육감)		국학
16	미룡동	704	3	대	388	388	국(교육부)		국대
17	미룡동	704	5	학	53	53	국(교육부)		국학
18	미룡동	704	6	도	19	19	국(교육부)		국도
19	미룡동	705	1	도	33	33	김기태	전라북도 군산시 미룡동 361	사도
20	미룡동	720	6	구	283	283	한국농어촌공사		사구
21	미룡동	720	7	구	116	116	한국농어촌공사		사구
22	미룡동	834	3	도	9	9	국(교육부)		국도
23	미룡동	834	7	도	32	32	국(교육부)		국도
24	미룡동	834	9	도	4,337	316	국(국토교통부)		국도
25	미룡동	834	28	도	60	59	국(교육부)		국도
26	미룡동	834	62	도	11	11	국(국토교통부)		국도
27	미룡동	840		도	496	496	국(교육부)		국도
28	미룡동	산67	2	임	198	198	국(교육부)		국임
29	미룡동	산70		임	1,432	476	박영순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사임
30	미룡동	산77	1	도	240	240	국(국토교통부)		국도
31	미룡동	산97		임	99	99	국(교육부)		국임
32	미룡동	산116		임	17,361	17,361	국(교육부)		국임
33	미룡동	산123	1	임	595	595	국(교육부)		국임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읍면동	지번	지목			성명	주소		
33	미룡동	산123	1	임	595	595	국(교육부)		국임
34	미룡동	산125		임	198	198	국(교육부)		국임
35	미룡동	산126		임	99	99	국(교육부)		국임
36	신관동	1		학	70,298	70,298	국(교육부)		국학
37	신관동	41	3	도	53	53	국(교육부)		국도
38	신관동	41	34	전	638	638	국(교육부)		국전
39	신관동	41	36	답	634	634	국(교육부)		국답
40	신관동	41	37	답	1,008	180	국(교육부)		국답
41	신관동	42	81	구	1,895	1,073	국(교육부)		국구
42	신관동	160	1	전	175	2	국(교육부)		국전
43	신관동	161		전	40	37	국(교육부)		국전
44	신관동	162		전	744	332	국(교육부)		국전
45	신관동	163		대	413	413	국(교육부)		국전
46	신관동	164		대	235	235	국(교육부)		국전
47	신관동	165		전	73	73	국(교육부)		국전
48	신관동	166		대	311	311	국(교육부)		국대
49	신관동	167		대	155	155	국(교육부)		국대
50	신관동	168		대	258	258	국(기획재정부)		국대
51	신관동	169		전	311	222	국(교육부)		국전
52	신관동	178	2	임	60	60	국(교육부)		국임
53	신관동	190		전	899	693	이장세	전라북도 군산시 신촌북길 50-6(신관동)	사전
54	신관동	190	1	전	1,983	1,934	김정자	전라북도 군산시 신관동 189	사전
55	신관동	288		전	975	975	이장세	전라북도 군산시 신촌북길 50-6(신관동)	사전
56	신관동	290	2	학	225,819	224,667	국(교육부)		국학
57	신관동	304		전	288	288	국(교육부)		국전
58	신관동	327	3	도	93	93	황수옥	전라북도 군산시 중앙로2가 47	사도
59	신관동	356		답	1,782	931	국		국답
60	신관동	357		전	2,020	22	조성일	전라북도 군산시 신관동 170(2통1반)	사전
61	신관동	361		전	641	92	김종환	서울 강동구 상일동 131	사전
62	신관동	403		답	1,421	29	김홍철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로	사답
63	신관동	405		전	902	68	조성기	전라북도 군산시 하나운로 45	사전
64	신관동	427		학	3,274	2,320	국(교육부)		국학
65	신관동	429	31	임	324	5	유연철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312	사임
66	신관동	941	9	도	22	22	국(국토교통부)		국도
67	신관동	941	10	도	210	210	국(국토교통부)		국도
68	신관동	941	22	도	738	738	국(교육부)		국도
69	신관동	941	31	도	797	82	국(국토교통부)		국도
70	신관동	산14	7	임	451	451	최정수	전라북도 익산시 동산동 299	사임
71	신관동	산16	6	임	99	99	국(교육부)		국임
72	신관동	산26		임	5,646	87	나홍렬	서울 강남구 청담동 134-9	사임
73	신관동	산31		임	56	56	문명국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사임
74	신관동	산35		임	992	105	김급이	전라북도 군산시 하나운로 28, 203동	사임
75	신관동	산53		임	2,281	123	한상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판교로	사임
76	신관동	산62	1	임	818	818	국(교육부)		국임
77	신관동	산71	1	임	3,574	123	국(교육부)		국임
78	신관동	산73		임	1,488	27	국(산림청)		국임
79	신관동	산76		임	2,018	48	박미순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죽산리 560	사임
80	신관동	산79		임	1,785	106	허미경	경기도 광주시 태성로 107, 103동 403호	사임
81	신관동	산112		도	298	298	국(교육부)		국도

정읍시 공고 제2023-516호

## 정읍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열람공고

정읍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하오니 열람 후 의견이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3월 31일  
정 읍 시 장

### 1. 정읍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 설	-	상평동 00아파트 지구단위계획구역	상평동 23-4번지 일원	-	증)40,010	40,010	금 회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결정 사유
-	상평동 00아파트 지구단위계획구역	정읍시 상평동 23-4번지 일원	40,010	○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구역내의 주거 기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사업 시행을 반영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고자 함.

### 2. 정읍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조서

####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 가. 용도지역 결정 조서 “해당사항 없음”  
 나. 용도지구 결정 조서 “해당사항 없음”  
 다. 용도구역 결정 조서 “해당사항 없음”

□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중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4	25~50	주간선	5,388	대1-3/ 상평동967-1	농소동 구역계/ 292-4	일반 도로	1,2호공원 5,6호광장	'86.5.29	
변경	대로	3	4	25~50	주간선	5,388 (137)	대1-3/ 상평동967-1	농소동 구역계/ 292-4	일반 도로	1,2호공원 5,6호광장	'86.5.29	
기정	중로	2	12	15	보조간선 도로	540	대1-3/ 상평동 264	대3-4/ 상평동 23-1	일반 도로	운동장	'86.5.29	
변경	중로	2	12	15~20	보조간선 도로	540 (110)	대1-3/ 상평동 264	대3-4/ 상평동 23-1	일반 도로	운동장	'86.5.29	
기정	소로	1	78	10	국지 도로	452	중1-1/ 상평동63-1	중2-2/ 상평동 산15-13	일반 도로	정읍기상대	'96.11.21	
변경	소로	1	78	10	국지 도로	452 (210)	중1-1/ 상평동63-1	중2-2/ 상평동 산15-13	일반 도로	정읍기상대	'96.11.21	
신설	소로	3	00	4~6	특수 도로	67 (67)	소로1-78/ 상평동 산15-1	상평동 914-5	보행자 도로	-	금회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폭원, 연장, 기점, 중점임.

나.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3-4	대로3-4	· 도로폭 : 25~50m	· 가감속차로를 위한 도로폭 변경
중로2-12	중로2-12	· 도로폭 : 15~20m	· 가감속차로를 위한 도로폭 변경
소로1-78호선	소로1-78호선	-	·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도로변경(현황반영)
-	소로3-00호선	· 도로폭 : 4~6m · 연 장 : 67m	·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특수도로(보행자전용도로)신설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m <sup>2</sup> )	획 지			비고
			획지번호	위 치	면적(m <sup>2</sup> )	
총 계		36,800			36,800	
-	I	16,663	①	상평동 23-3번지 일원	16,663	
-	II	20,137	①	상평동 23-4번지 일원	20,137	

□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법 규 정 (정읍시조례)
	가 구	획 지			
-	I	①	용 도	· 지정용도 : 「주택법」 제2조에 의한 공동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30%이하 (26.67%)	· 60%이하
			용적률	· 235%이하 (232.07%)	· 250%이하
			높 이	· 20층 이하	
			형 태	· 탑상형 5호조합 이내 · 주민보행, 개방감확보를 위한 일부 저층부 필로티 설치	-
			배 치	· 주변지역의 환경과 조화되고, 단지 내 주민들의 일조권이 최대한 확보 되도록 남·동향 위주의 주동배치 · 단지내 휴식공간 및 편의시설과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주동배치	-
			건축선	-	-
			색 채	· 색채의 통일성을 유지하되 주변자연과 조화를 고려 - 주조색 : 따뜻한색 또는 무채색 계통의 밝은색 권장 - 보조색 : 주조색과 같은 계통으로 4가지 이내 권장 - 강조색 : 제한없음	-
-	II	①	용 도	· 지정용도 : 「주택법」 제2조에 의한 공동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30%이하(20.05%)	· 60%이하
			용적률	· 240%이하(234.25%)	· 250%이하
			높 이	· 26층 이하	
			형 태	· 탑상형 5호조합 이내 · 주민보행, 개방감확보를 위한 일부 저층부 필로티 설치	-
			배 치	· 주변지역의 환경과 조화되고, 단지 내 주민들의 일조권이 최대한 확보 되도록 남·동향 위주의 주동배치 · 단지내 휴식공간 및 편의시설과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주동배치	-
			건축선	-	-
			색 채	· 색채의 통일성을 유지하되 주변자연과 조화를 고려 - 주조색 : 따뜻한색 또는 무채색 계통의 밝은색 권장 - 보조색 : 주조색과 같은 계통으로 4가지 이내 권장 - 강조색 : 제한없음	-

□ 경미한 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경미한 사항	비 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5항 및 시행령 제25조 제4항에 의한 경미한 사항	-

□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 가. 획지에 관한계획,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율·높이에 관한계획 이외의 사항은 「주택법」에 의한 사업의 승인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 나. 차량의 진·출입은 결정도면에 표시된 부분만 허용한다.

3. 공람기간 : 공고 다음날부터 14일 이상

4. 공람장소 및 주민 의견서 제출처 : 정읍시 도시과(☎ 063-539-5782)

5. 관련도서 : 실음생략(관련도서는 정읍시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진안군 고시 제2023-41호

## 진안 군계획시설(도로:소로3-12호 외 1개소)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진안군 진안읍 군하리 일원에 전북고시 제1972-133호(1972.05.26.)로 결정된 군계획시설(도로:소로3-12호선, 소로3-17호선)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같은 법 제88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진 안 군 수

2023년 3월 31일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진안군 진안읍 군하리 113-37, 187-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진안 군계획시설(도로:3-12호, 3-17호)사업
  - 나. 명 칭 : 도시계획도로(소로3-12호 외 1개소) 사유토지 보상사업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가. 소로3-12호선 실시계획인가 신청면적 : 81m<sup>2</sup>
  - 나. 소로3-17호선 실시계획인가 신청면적 : 63m<sup>2</sup>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진안군수
  - 나. 주 소 :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중앙로 67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가.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 나. 준공예정일 : 2023.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관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참고
7.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조서

○ 소로3-12호선 편입토지조서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비고
	읍	리	지번	지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계		3필지			102	81					
1	진안	군하	113-37	도로	14	8	임동수	진안읍 군하리 113-14			
2	진안	군하	113-45	대	3	3	임동수	진안읍 군하리 113-14			
3	진안	군하	113-46	대	85	70	임일환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대평이길 34-5)			

○ 소로3-17호선 편입토지조서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비고
	읍	리	지번	지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계		1필지			63	63					
1	진안	군하	187-1	대	63	63	이판기	진안읍 군하리 187			

수용 또는 사용할 지장물 조서

○ 소로3-12호선 물건조서

연번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물건 소유자 및 관계인		비고
	읍	리	지번			성명	주소			
1	진안	군하	113-14	담장	콘크리트 H=2m	1	식	임일환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대평이길 34-5	
				대문	철재 1.3*1.8	1	식			
				대문기둥	0.3*0.3*h=1.8m	2	식			
				주택	콘크리트 시멘트기와	92.62	m <sup>2</sup>			
				창고	철파이프조 스레트	70.50	m <sup>2</sup>			
				화장실	조적조 스레트	↑				
				가추	목조 스레트	29.66	m <sup>2</sup>			
				바닥포장		50	m <sup>2</sup>			
				장독대		1	식			
				우물		1	식			

진안군 공고 제2023-383호

## 진안 군계획시설(도로/소로3-2호)사업 실시계획 인가(변경) 열람공고

1.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통해 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고 도시계획시설의 유지관리 향상에 따른 활기찬 도시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군계획시설(도로:소로3-2호)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사항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하오니 관계도서를 열람하신 후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관계도서는 진안군청 건설교통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 등에게 보입니다.

진 안 군 수

2023년 3월 31일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진안군 진안읍 군하리 287-6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진안 군계획시설(도로:소로3-2호)사업
- 2) 명 칭 : 도시계획도로(소로3-2호) 확포장공사

다.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1) 규 모 : L=86m, B=6m, A=578m<sup>2</sup>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1) 성 명 : 진안군수
- 2) 주 소 :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중앙로 67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변경)

- 당초 : 실시계획 고시일 ~ 2022. 12. 31.
- 변경 : 실시계획 고시일 ~ 2023. 12.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참고

사. 위치도 및 사업계획서, 실시계획도서 : 게재생략(열람 장소에 비치)

아. 열람기간 : 2023. 3. 31. ~ 2023. 4. 14.(14일간)



자. 열람기간 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장소에 비치된 의견서를 우편(진안군 진안읍 중앙로 67, 건설교통과) 또는 팩스(☎063-430-2709)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안군청 건설교통과(☎063-430-24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소로3-2호선]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조서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 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외의 권리		
	읍·면	리	지 번				성 명	주소	권리종류	주소	권리자
합 계					27	27					
1	진안	군하	295-14	대	27	27	국 (농림축산식 품부)	-			

익산소방서 공고 제2023-5호

### 자체점검 이행계획서 검토 결과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규정에 따라 자체점검 이행계획서에 따른 검토 결과 통지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고 통상의 방법으로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 3. 31.

익 산 소 방 서 장

□ 공고기간: 2023. 3. 31. ~ 2023. 4. 13.

□ 공고내용

- 1. 평소 소방행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2.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지하니 관계인\*께서는 기간 내에 이행하여 주시고, 이행완료 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계인 :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가. 대 상 : 파일론상가(익산시 동서로 19길 67-1)

나. 이행사항

- 1) 스프링클러설비 : 1층 알람벨브 탬퍼스위치 선로 분리 구역 (선로 정상 상태)
- 2) 옥내소화전 : 지하수조 메인 밸브 고착으로 인한 폐쇄 불량
- 3) 자동화재탐지설비
  - 가) 회로 선로 단락으로 인한 수신기 내 선로 분리 구역 (지하1층-2번)
  - 나) 1층 2번 발신기 탈락
- 4) 유도등 및 유도표지 : 보조계단 2층/1층 계단통로유도등(좌상우하) 커버탈락

**※ 기 조치명령서와 중복된 내용은 기 조치명령서 조치기간에 따름**

다. 기 간 : 2023. 4. 14. ~ 2023. 5. 28. (45일간)

라. 이행완료 보고서 제출 기한 : 2023. 6. 9. (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

마. 제출서류 : **이행완료보고서(붙임), 이행 전·후 사진 증명자료, 소방시설공사 계약서**

바. 참고사항

- 1) 기간 내에 완료하지 아니한 자 또는 이행계획 완료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하오니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2) 또한, 본 소방시설 보수 및 정비 공사는 소방시설공사업에 등록된 자만이 할 수 있으며, 소방시설공사업자가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불이익에 처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관계인이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이행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기간 만료 3일 전까지 불임의 "**이행계획 완료 연기신청서**" 서식에 이행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나) 경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 중이거나 변동된 경우

다) 관계인의 질병, 사고, 장기출장 등의 경우

라) 그 밖에 관계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부도 또는 도산 등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여 이행계획을 완료하기 곤란한 경우

사.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익산소방서 방호구조과(063-839-3246/3267)로 문의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붙임 1.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완료 보고서 서식 1부.

2.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 완료 연기신청서 1부. 끝.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완료 보고서**

특정소방 대상물	대상물 명칭(상호)	대상물 구분(용도)
	관계인 (성명:                      전화번호:                      )	소방안전관리자 성명: 전화번호:
	소재지	
소방공사 업체	업체명(상호)	사업자번호
	대표이사 (성명:                      전화번호:                      )	
	소재지	

이행완료 사항	이행조치 내용	이행조치 일자
		예) 소화펌프(가압송수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동력·감시 제어반 또는 소방시설용 전원(비상전원을 포함한다)의 고장사항 수리
예) 화재 수신기의 고장으로 화재경보음이 자동으로 울리지 않거나 화재 수신기와 연동된 소방시설의 작동 불량사항 수리		○ ○ ○ ○ ~ ○ ○ ○ ○
예) 소화배관 등이 폐쇄·차단되어 소화수(消火水) 또는 소화약제가 자동 방출 불량사항 수리		○ ○ ○ ○ ~ ○ ○ ○ ○
예) 기타 사항 수리		○ ○ ○ ○ ~ ○ ○ ○ ○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등의 수리·교체·정비에 대한 이행완료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관계인: (서명 또는 인)

**익산 소방서장 귀하**

첨부서류	1. 이행계획 건별 이행 전·후 사진 증명자료 1부 2. 소방시설공사 계약서(이행조치 내용과 관련됩니다) 1부
<b>유의 사항</b>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 제8호 및 제9호	1.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법 제22조에 따른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에 따른 수리·조치·정비사항 발생 시 이행계획서를 첨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2.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등의 수리·조치·정비 이행계획을 별도의 연기신청 없이 기간 내에 완료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sup>2</sup>) 또는 중급지(80g/m<sup>2</sup>)]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 ] 면제 [ ] 연기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신청내용	면제(연기) 대상	건물명(업체명)	용도
		주소	(전화번호 )
	면제(연기) 기간		
	[ ] 면제 [ ] 연기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경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 중이거나 변동된 경우 3. 관계인의 질병, 사고, 장기출장의 경우 4. 그 밖에 관계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부도 또는 도산 등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면제 또는 연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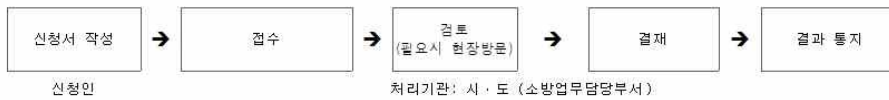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익산 소방서장 귀하

첨부서류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자체점검을 실시하기 곤란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 처리절차



210mm × 297mm [백상지(80g/㎡) 또는 종결지(80g/㎡)]